

2018

부패·공익침해 신고 사례집

- 제17집 -



국민권익위원회

발 간 사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청렴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2022년 세계 20위권 청렴국가 도약을 목표로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반부패·청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출범시키고, 4대 전략 50개 과제로 구성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등 반부패 개혁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경제계·학계·언론계·법조계·시민사회단체 등의 대표가 참여하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구축하였고, 젊은이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출발선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적발하였으며, 특혜 등 소지가 있는 해외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해외출장 부당지원 관행도 개선했습니다.

또한, 안심하고 부패·공익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18.2월 시행)하여 누구든지 신고자 신분을 누설할 경우 처벌 받도록 하였고, 신분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18.10월 시행) 하여 신고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대신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반부패·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은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아 올해 초 세계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 결과에서 2016년 53점(52위)에서 2018년에는 역대 최고 점수인 57점(45위)으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2018년 부패·공익침해 신고 사례집」은 그간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공익신고 분야에서 조사처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1년 동안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7,328건의 부패신고와 3,923건의 공익침해 행위 신고 건 중에서 핵심적이고 의미있는 사례를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간하는 「2018년 부패·공익침해 신고 사례집」이 공직자 등이 반면교사의 길잡이로 삼아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고, 특권과 반칙 등 부정부패가 없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 은 정**



■ 일러두기

『2018년 부패·공익침해 신고 사례집』은 매년 공직사회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의 주요 사례를 정리한 17번째 자료집입니다.

본 사례집은 조사관 조사결과, 수사·감사·조사기관의 결과를 포함한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신고 사건과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포상·구조금 등의 사례를 위원회 상정 순서에 따라 요약하고 정리한 사례집으로, 신고자가 신고를 할 경우 어떻게 처리되고 어떤 보호·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본 사례집은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활용하여 공직사회에서 동일·유사한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청렴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일조하고, 일반 국민에게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여 신고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사례집에 수록된 사례의 일부는 관계 기관에서 현재 감사·수사·조사가 진행되거나 소송 등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신고자 등을 익명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목 차

제1장 부패신고 사건

[2018년 부패행위 신고사건]

01. 지자체 레저스포츠시설 설치비용 편취 등 부패행위 의혹	5
02. 지자체의 음식물폐기물 용기 세척 용역 계약 비리 의혹	6
03. ○○보증기금 불법대출 의혹	7
04.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8
05. 장애인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의혹	9
06. 민·군기술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0
07.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1
08. 한부모가족 지원금 및 기초교육급여 등 부정수급 의혹	12
09. 지자체의 수문 권양기 설치비 편취 의혹	13
10. 사립대학 총장의 기부강요 등 의혹	14
11. ○○문화축제 지원금 등 부정수급 의혹	15
12. 문화기술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6
13. 도로개선 공사비 편취 등 의혹	17
14. 하수관거 정비 민간투자사업 공사비 편취 등 의혹	18
15.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9
16. 대학교수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20
17. 혁신형 기술개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21
18.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	22
19.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23
20.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등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24
21.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금 등 부정수급 의혹	25
22. 군 부대의 동(銅)케이블 등 횡령 의혹	26
23.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비 편취 의혹	27
24. ○○지도사 배치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28
25. 지방자치단체 시설위탁업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29
26. ○○보존회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30
27. 사립학교법인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31
28.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32
29. 한부모가족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33
30. 사회복지시설 부정수급 의혹	34

31.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의혹	35
32. 공립중학교 공무원의 공금횡령 의혹	36
33. 관급공사 공공예산 편취 의혹	37
34. IC 건설 공사비 편취 의혹	38
35. 청소업체 용역계약조건 부당 변경 등 의혹	39
36. 지자체의 휴대폰요금 부당지급 의혹	40
37. 공공기관 연구원의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 의혹	41
38.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42
39. 주민지원사업비 부정수급 의혹	43
40.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44
41. 지역자활센터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45
42. 국민연금 부정수급 의혹	46
43.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창업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47
44.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48
45.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49
46.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50
47. ○○공연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51
48.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52
49.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53
50.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54
51. 공립대 교수의 실험실습 기자재 절도 등 부패행위 의혹	55
52. 공공기관 직원의 뇌물수수 의혹	56
53.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부정수급 의혹	57
54.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부패 의혹	58
55.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59
56. 기초연금 부정수급 의혹	60
57. ○○문화학교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61
58.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	62
59.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비 부정수급 의혹	63
60.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비 부정수급 의혹	64
61. 스마트공장 구축사업비 부정수급 의혹	65
62. 아동급식 도시락 지원사업비 부정수급 의혹	66
63. 창업성장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67
64. 도립교향악단 직원의 부패행위 의혹	68
65. 관급공사 업체의 공사비 편취 의혹	69
66. 음식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계약 위반 의혹	70
67.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71

68.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비용 부정수급 의혹	72
69.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비용 부정수급 의혹	73
70.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74
71. 에너지기술개발사업 등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75
72. 산업기술혁신사업 등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76
73. 노인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77
74.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78
75.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79
76. 어업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80
77.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81
78. 사립대학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82
79.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83
80.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84
81.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85
82. 시민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86
83.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 의혹	87
84. 한우농가 지원사업비 부정수급 의혹	88
85. FTA 컨설팅 지원사업비 부정수급 의혹	89
86. ○○ 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90
87.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	91
88. 선관위 공무원의 조합장 선거조작 비리 의혹	92
89. 방위산업물품 원자재 대금 편취 의혹	93
90. 지자체의 휴대폰요금 부당지급 의혹	94
91. 혁신형 창업기업양성 프로젝트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95
92. 조림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96
93. 건강보험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97
94.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98
95.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	99
96.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	100
97.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01
98. 사립대학교 의료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02
99. 프랜차이즈업체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03
100. 아동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04
101.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	105
102. 공공기관의 공무국외여행 비용 편취 등 의혹	106
103.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107
104. 채용예정자 훈련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08

105.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09
106. ○○일자리희망센터 인건비 부정수급 의혹	110
107.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11
108. ○○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12
109.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비 부정수급 의혹	113
110.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편취 등 의혹	114
111. 시장창조지원사업비 부정수급 의혹	115
112.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16
113.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17
114.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 의혹	118
115. 일학습병행제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19
116. 감사담당자의 허위사건 조작 및 상장수여 등 부패 의혹	120
117. 공공기관의 용역비 산출 관련 예산낭비, 오폐수 방류 등 의혹	121
118. 공공기관 창업·신용 대출자금 부정사용 등 의혹	122
119. 지역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23
120. ○○공단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24
121. 대학병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25
122.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26
123.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27
124.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28
125. 대학교수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29
126.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30
127. 노인복지센터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31
128. 장애인협회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32
129. 대학교수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33
130.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34
13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35
132. 현장기술인력재교육사업 지원금 등 부정수급 의혹	136
133.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37
134. 관급공사 공공예산 편취 의혹	138
135. 연구용역비 편취 의혹	139
136. 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40
137.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41
138.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42
139. 전통시장활성화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43
140.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44

141.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45
14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등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46
14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47
144. 축사신축보조금 부정수급 부정수급 의혹	148
145. 사립유치원 원장의 보조금 등 부정수급 의혹	149
146. 한부모가족 지원금 등 부정수급 의혹	150
147.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51
148. 일학습병행제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52

[이첩사건 처리결과 추록]

01. ○○협회 정부 지원금 횡령 의혹	155
02. ○○ 공사 인건비 등 편취 의혹	156
03.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157
04. ○○ 위탁운송 업체의 운송비 편취 의혹	158
05.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59
06. 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60
07. 사회서비스 바우처 비용 부정수급 의혹	161
08.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62
09.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63
10. ○○ 공공주택지구 보상금 편취 비리 의혹	164
11.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	165
12. 한부모가족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66
13.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67
14. 일학습병행제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68

제2장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01. 부당한 업무지시 등 신고 관련 신분공개여부 확인 요구	173
02. 「산업재해 은폐 강요 의혹 등」 신고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	174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

01.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77
02. 「사회서비스 바우처 비용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78

03.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79
04. 「실비요양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80
05.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81
06.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82
07.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183
08. 「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사업 등 보조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84
09. 「게임업체의 보조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85
10. 「장애인활동 보조 서비스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86
11. 「공장설치 지원금 등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87
12.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관련 보조금 편취 등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88
13.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편취 등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89
14.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90
15. 「철도 터널 공사비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91
16.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92
17. 「버스재정지원금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93
18. 「철도 터널 공사비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94
19. 「거꾸집 미설치로 인한 경계석 부설시공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	195
20. 「공공기관 건설현장 불량건축자재 납품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96
21. 「요양급여 비용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97
22. 「계약회사 공공기관 로비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98
23. 「공공기관 발주 아파트 공사비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99
24. 「공공기관의 토목용 보강재 구매예산 낭비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00
25.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01
26. 「구청 직원의 출장여비 부당 수령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02
27. 「민간위탁기관의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03
28.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04

29.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정부출연금 편취 등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05
30. 「장애인 표준사업장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06
31. 「허위 하도급에 의한 공사비 편취 등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07
32.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08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01. 「국립대 교수의 퇴임선물 명목 금품수수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211
02. 「관급공사의 아스콘물량 허위과다 청구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212
03.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213
04. 「지방계약직 채용비리 의혹 등」건 관련 포상금 지급	214
05. 「공공기관 재정 손실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215
06. 「하수관거 정비공사비 부당청구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216
07. 「국군복지단 장병물품 납품비리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217
08. 「고등학교 맞춤형 수업운영수당 편취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218
09.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219

제3장 공익신고 사건

[공익침해 신고사건]

01. 완강기 주변 물건 적치 의혹	223
02.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의혹	224
03. 액화염소가스 충전 및 저장 위반 의혹	225
04. 병원 내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행위 의혹	226
05. 도장 집진시설 비정상운영 의혹	227
06. 불법 폐기물 처리 의혹	228
07. 진료하지 않은 의사 명의의 처방전 발행 의혹	229
08. 무자격자 눈썹신신 시술 의혹	230
09. 건축자재 성능인증서 부정발급 의혹	231
10.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사용 의혹	232

11.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 의혹	233
12.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혹	234
13. ○○○ 제작업체들의 입찰담합 의혹	235
14. 진료기록 허위 작성 및 부당청구 의혹	236
15. 약사가 아닌 사람의 의약품 조제 의혹	237
16. 오수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의혹	238
17.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	239
18.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무단 운영 등 의혹	240
19. 산업용 보일러 제조검사 미이행 등 의혹	241
20. 수입산 유채유의 원산지 허위 표시 의혹	242
21. 원산지 라벨 교체 의혹	243
22. 나이트클럽의 고급 주류 가격 담합 의혹	244
23. 무등록 건설업 운영 의혹	245
24. 무신고 숙박업소 운영 의혹	246
25.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위반 의혹	247

제4장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구조

[공익신고자 보호]

01.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 관련 책임감면 신청	253
02. 「폐기물관리법」 위반 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	254
03. 「노인학대」 신고 관련 책임감면 신청	255
04. 「노인학대」 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	256
05. 허위·과장 광고 신고 관련 신분공개경위 확인 요구	257
06. 장애인 체벌 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	258
0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신고 관련 신분공개경위 확인 요구 ...	259
08. 「어린이집 부실 급·간식 및 아동학대」 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	260

[공익신고자 보상]

01.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건 관련 보상금 지급	263
02.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 감면 모의」건 관련 보상금 지급	264
03.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	265

04.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266
05. 「예금 등의 설명 확인의무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267
06.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방해」건 관련 보상금 지급	268
07.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1)	269
08. 「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미가동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270
09.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2)	271
10.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건 관련 보상금 지급	272
11. 「폐기물관리법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273
1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274
13. 「기관석면조사 미실시」건 관련 보상금 기각	275
14. 「건축물 가구수 무단증가」건 관련 보상금 지급	276
15. 「식품회사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	277
16. 「주유소 정량미달 유류 판매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278
17. 「의료기관의 불법 광고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	279
18. 「요양병원 환자 폭행」건 관련 보상금 지급	280
19. 「시외버스 운행노선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281
20.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건 관련 보상금 지급	282
21.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	283
22.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284

[공익신고자 포상]

01. 「의료법 위반 신고」건 관련 포상금 지급	287
02.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가상통화 판매」건 관련 포상금 지급	288
03. 「아동 학대행위」건 관련 포상금 지급	289
04.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건 관련 포상금 지급	290
05. 「상호저축은행 금지 행위 위반」건 관련 포상금 지급	291
06. 「무면허 의료행위」건 관련 포상금 지급	292
07. 「폐수 무단 방류」건 관련 포상금 지급	293

[공익신고자 구조]

01. 「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신고」건 관련 구조금 지급	297
02. 「아동 학대행위 등 위반 의혹」 신고 관련 구조금 지급	298
03.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 신고 관련 구조금 지급	299

- 04. 「무면허 의료행위 의혹」 신고 관련 구조금 지급 300
- 06. 「작업장 안전조치 소홀 의혹」건 관련 구조금 지급 301

제5장 참고자료

- 1. 부패행위신고 및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이해 305
- 2.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의 이해 310

제1장

부패행위 신고사건

1. 2018년 부패행위 신고사건
2. 이첩사건 처리결과 추록

제1장 부패행위 신고사건

2018년
부패행위 신고사건



지자체 레저스포츠시설 설치비용 편취 등 부패행위 의혹

1분과위원회(2018. 1. 22.)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1. 6. 9.부터 2013. 2. 15.까지 약 120,000만 원으로 '00군 스캐드다이빙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위 시설의 특허권자로부터 중고제품을 수입·설치하였음에도 신품을 설치한 것처럼 00군을 속여 사업비를 편취하였고, 담당공무원들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를 묵인한 의혹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이 사건 시설공사에 신품 대비 약 40% 가격인 중고부품을 설치하였음에도 신품을 설치한 것처럼 하여 사업비 37,357만 원 편취하였고, 담당공무원들은 납품물품 검사업무 소홀 및 손해배상청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한 사실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도로 각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 통보일자 : '18. 6. 7.
 - ○○부, ○○도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부와 ○○도 조사결과 확인·검토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 착안사항 : 수입신고필증 및 송장 등

지자체의 음식물폐기물 용기 세척 용역 계약 비리 의혹

1분과위원회(2018. 1. 22.)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가 음식물폐기물 용기 세척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계약법령 등을 준수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고, 세척용역업체에게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한 부당한 계약 체결로 약 13,257만 원의 예산과 특정업체 선정을 위한 제한경쟁입찰로 약 24,390만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세척용역업체로 하여금 액수미상의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방치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조사 중



5. 비고

- 적용법령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 착안사항 : 세척용역업체 자료 등

○○보증기금 불법대출 의혹

1분과위원회(2018. 1. 22.)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주)○○ 대표로, 2011.12.경부터 2012.7.경까지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타인 명의를 빌려 법인 및 사업자등록을 개설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위조한 후 허위의 사업장을 꾸며놓고 ○○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서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자금대출금 수억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2.2.부터 2012.9.까지 타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위조한 후, ○○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중소기업자금대출금 6억 5천만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부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231조·제234조·제347조
- 착안사항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 등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1. 22.)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주)○○ 대표로, 2017.4.경 ○○부와의 협약을 통해 약 5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연구 인건비 수천만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가 2017.4.부터 2017.12.까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허위연구원 3명에 대한 인건비 3,463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인건비를 부정하게 교부받은 사실 확인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8. 6. 4.
 - ○○부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40조
- **착안사항**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 인건비 집행내역 등

장애인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1. 22.)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근로자를 허위 등재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편취하고, 장애인 활동보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바우처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 등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근로자를 허위로 등재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편취하였으며, 직원이 결근하는 경우 급여 일부를 되돌려 받아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장애인 활동보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바우처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8천 7백만 원을 편취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들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8. 11. 7.
 - ○○부, ○○도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부,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보조금법 제40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형법」 제347조·제356조
- 착안사항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민·군기술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1. 22.)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민·군기술적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소속 직원을 연구원으로 등록한 후 연구원 통장을 관리하면서 인건비를 횡령하고, 피신고자가 실소유자인 페이퍼컴퍼니와 공모하여 허위매출을 일으키거나 사업수행과 무관한 물품 구입을 연구비로 집행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정부지원금 14억 8,500만 원 규모의 민·군기술적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연구원들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연구원들의 인건비 약 5,803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피신고자가 만든 페이퍼컴퍼니와 6억 1,313만 원을 거래하였다가 8,903만 원을 재입금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인건비 횡령 등 8억 1,699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 통보일자 : 2018. 10. 24.
 - ○○부, ○○청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 수용하고, ○○부 및 ○○청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56조, 보조금법 제40조
- **착안사항** : 사업계획서, 연구비 사용내역, 통장거래내역 등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1. 22.)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5~2016년경 국책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보조금을 편취하고, 2016년경 이미 개발된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개발하겠다고 속여 6억 원 규모의 정부지원 기술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5~2016년 ○○부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거래업체에서 취급하지 않는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9,800만 원을 편취하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미 개발된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규로 개발하겠다고 속여 3억 7,645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2013년 경부터 9개의 정부지원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장비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원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16억 2,667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 통보일자 : 2018. 9. 18.
 - ○○부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40조
- **착안사항** : 사업계획서, 보조금 지급 정산내역서, 사업관련 자료 등

한부모가족 지원금 및 기초교육급여 등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1. 22.)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6.4.경 이후 매월 전 남편으로부터 자녀양육비 130만 원, ○○병원에서 급여 200만 원을 받아 월 33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한부모가족 지원금 및 기초교육급여를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6.4.경 이후 매월 전 남편으로부터 자녀양육비 130만 원, ○○병원에서 경리직으로 일하며 급여 200만 원을 지급받아 월 33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보장기관에 소득변동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6.5.경부터 2017.10.경까지 18개월 동안 모두 460만 원의 한부모가족 지원금 및 기초교육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시, ○○교육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정수금액 391만 원 환수 및 고발 조치
※ 통보일자 : 2018. 3. 5.
 - ○○교육청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교육급여 및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정수금액 50만 원 환수 및 고발 조치
- **위원회 검토의견**
 - ○○시 조사결과와 ○○교육청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교

- **적용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9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형법 제347조
- **착안사항** : 통장 거래내역 및 급여명세서 등

지자체의 수문 권양기 설치비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8. 2. 5.)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 주식회사 실제 운영자로, 수문 권양기 과부하 안전장치 교체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설치된 장치를 떼어내 세척한 다음 도색만 하여 다시 설치하였음에도 마치 새 제품으로 교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공사비를 청구하여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작업사진 및 현장조사 결과 등을 통해 중고 제품으로 교체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청 각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
 - ※ 통보일자 : 2018. 6. 28.
 - ○○도 조사결과, 공사비 허위청구에 따른 환수 및 관련자 징계 조치
 - ※ 통보일자 : 2018. 6. 25.
 - ○○청 조사결과, 업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재처분 없음' 결정
 - ※ 통보일자 : 2019. 2. 1.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 및 ○○도 및 ○○청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나목, 형법 제347조(사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 **착안사항** : 담당공무원의 진술 및 현장조사 등

사립대학 총장의 기부강요 등 의혹

1분과위원회(2018. 2. 5.)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가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성과금 및 학생자율경비를 기부할 것을 강요하고,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회의참석 수당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여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대학보직자 연수, 예산소위원회 심의검토, 대학발전 보고회 행사 등 경비를 교비회계에서 약 32,000만 원을 집행하여 횡령하고, '13. 3. 1.부터 '17. 2. 29.까지 교직원(645명)과 기업체(54개)로부터 총 42,400만 원의 발전기금과 총 17,600만 원의 산학협력 단 기부금을 받은 사실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각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업무방해, 업무상 횡령혐의 기소의견, 강요 혐의 불기소 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18. 12. 4.
 - ○○부 조사결과, 환수 130,354만 원, 징계 16명, 고발 6명, 수사익외 2명
※ 통보일자 : 2019. 1. 19.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 착안사항 : 학교발전기금, 교비회계자료 등

○○문화축제 지원금 등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2. 5.)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주)○○를 운영하면서, (사)○○진흥원이라는 비영리법인을 만들어 ○○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정산내역을 제출하고 실제로는 그 일부를 되돌려 받고, (주)○○와 (사)○○진흥원 간 허위 거래내역을 정산자료로 제출하여 ○○문화축제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문화축제 사업에 참가하여 실제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재고를 활용하였음에도 이를 (주)○○에서 구매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제출하고, (주)○○를 주관기관으로 과제를 수행하면서 시제품 제작비를 집행한 것처럼 허위의 사업비 집행내역을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총 9,640만 원을 편취·횡령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부, ○○시, ○○시 ○○구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연구개발비 시제품 제작비 등의 횡령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8. 6. 25.
 - ○○시 조사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
※ 통보일자 : 2018. 5. 8.
 - ○○부 조사결과, 사업비 6,033만 원 환수, 참여제한 3년 조치
※ 통보일자 : 2018. 9. 12.
 - ○○부, ○○시 ○○구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부, ○○시 ○○구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제355조·제356조, 보조금법 제22조·제33조·제40조
- **착안사항** : 보조금 지급 정산내역서, 실태조사 결과 등

문화기술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2. 5.)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5.6.경부터 2018.3.경까지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개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고, 회사의 사업예산을 연구비로 정산하거나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연구비를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약 4억 2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아 자신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회사 사업예산을 연구비로 정산, 허위연구원 등록, 거래업체를 통한 세금계산서 발행 후 연구비를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비 총 4억 2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 통보일자 : 2018. 10. 8.
 - ○○부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보조금법 제40조, 형법 제356조
- **착안사항** : 연구비 집행내역, 통장 거래내역 등

도로개선 공사비 편취 등 의혹

1분과위원회(2018. 2. 26.)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시가 2012. 3. 29.부터 2013. 9. 2.까지 사업비 154,238만 원의 '○○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피신고자들이 공모하여 어스앵커(Earth Anchor)¹⁾를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시공한 것처럼 하여 사업비 약 4,500만 원을 편취한 의혹



2. 의결이유

- ○○건설(주)가 2012. 10. 18.부터 2013. 9. 2.까지 이 사건 도로개선사업의 도급사인 ○○건설(주)로부터 약 100,000만 원으로 이 사건 도로개선사업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4,500만 원 상당의 어스앵커(Earth Anchor)를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시공한 것처럼 ○○시를 속여 사업비 전액을 지급받은 후, ○○시의 사업비 회수처분에 의하여 4,000만 원을 반납한 사실과 위 사업비 편취 과정에 피신고자들의 공모 의혹이 있음이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 ○○도로 각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검찰청 수사결과, ○○건설 현장대리인을 사기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구약식 기소
※ 통보일자 : 2018. 6. 18.
 - ○○도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검찰청 수사결과 수용하고, ○○도 조사결과 확인·검토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건설기술관리법
- **착안사항** : 준공검사 결과보고서 등

1) 흙 속에 구멍을 뚫고, 그 속에 PC강선을 매입하여 모르타르를 굳혀서 인발저항을 크게 한 것으로 흙 막기의 토압지지 등에 쓰임

하수관거 정비 민간투자사업 공사비 편취 등 의혹

1분과위원회(2018. 2. 26.)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시 하수관거 우수관로 및 오수관로 신설 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하수관로나 우수관로를 사용하여 새로 오수관로 및 우수관로를 신설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공사비를 청구하여 편취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묵인한 의혹



2.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공사비 편취에 대하여 과다 지급된 공사비 환수, 관련자 징계 등 조치를 위하여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 ○○도 각 이첩



4. 처리결과

- 대검찰청 조사결과, 현재 ○○시에서 본 건과 관련하여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회신 시(2019. 6.경)까지 시한부 기소 중지
 - ※ 통보일자 : 2019. 1. 5.
 - ○○도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대검찰청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제355조(횡령) 등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2. 26.)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주)○○ 대표로, 2013.12.경 ○○부와의 협약 등을 통해 4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거래업체와 공모하여 연구개발과는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는 방법 등으로 정부출연금 1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 본 건 과제들의 실무담당자의 진술 등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가 2013.12.부터 2017.12.까지 총 4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편취하거나 연구과제와는 무관한 물품을 구입한 후 마치 연구과제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전담기관들을 속여 정부출연금 약 13억 5,6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부, ○○부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40조
- **착안사항**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

대학교수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2. 26.)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대학교 교수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공공기관 등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 하면서 연구원으로 등록된 대학원생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인건비를 사무원을 통해 관리하고, 참여 연구원들에게는 매달 월급 명목으로 몇 십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인건비는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수익 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서 및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는 2015.1.부터 2017.12.까지 총 15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원들이 교부받아야 할 인건비 등을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약 2억 4천만 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동일 내용으로 이미 기소의견 검찰 송치된 건임에 따라 병합처리를 위해 검찰로 송치
 - ※ 통보일자 : 2018. 9. 10.
 - ○○부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제356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 **착안사항** : 신고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 등

혁신형 기술개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2. 26.)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주)○○의 대표로, 2017.5.경 ○○원과 협약을 맺고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연구원 인건비 수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부 산하 ○○원과 협약을 맺고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2017.5.경 ○○○를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2017.9.경부터 2018.1.경까지 실시간사업비관리시스템을 통해 4회에 걸쳐 연구원 인건비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약 1,008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연구원 인건비 편취사실이 확인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8. 7. 9.
 - ○○부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40조
- **착안사항** : 연구과제 수행협약서, 실시간사업비관리시스템, 정산자료 등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2. 26.)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09.6.경부터 2017.12.경까지 한부모가정 및 소득 없음을 이유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어 생계·주거급여 등을 지급받아왔으나, 2010.6.경부터 사실혼관계의 동거남과 부양의무자인 친정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며 이들의 월 소득 수백만 원을 숨기고 한부모세대인 것처럼 속여 수천만 원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09.6.경부터 2017.12.경까지 한부모가정 및 소득 없음을 이유로 ○○시 등으로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어 매월 100만 원~146만 원의 생계·주거급여 등을 지원받아 왔으나, 2010.6.경부터 사실혼관계의 동거남과 부양의무자인 친정어머니와 한집에 거주하며 이들의 월 급여 350만 원을 피신고자의 통장으로 이체 받아 생활하면서도 이를 숨기고 한부모세대인 것처럼 속여 ○○시 등으로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 약 8,000만 원을 부정하게 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혐의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8. 7. 18.
 - ○○시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 **착안사항** : 기초생계급여 지급내역, 소득 관련 자료 등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2. 26.)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1,2는 2016.4.경부터 피신고자3의 자녀 ○○○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제공 중 외출, 운동 또는 조기퇴근하거나 특정 요일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하고, 피신고자3은 장애가 있는 자녀 ○○○와 함께 거주하면서도 자녀를 1인 가구로 속여 추가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 수백만 원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활동지원급여비용 지원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 1, 2는 피신고자 3의 자녀 ○○○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자신이 관리하는 단말기에 허위로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 약 3,067만 원을 편취하고, 피신고자3은 장애가 있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면서도 자녀를 1인 가구로 속여 추가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약 111만 원을 편취하는 등 총 3,178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도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7조, 형법 제347조
- 착안사항 : 신고자의 진술, 활동지원급여비용 지원내역 등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등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3. 12.)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조명(주)의 실소유주로, ○○○를 명의상 대표로 내세워 10건의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제작하지 않은 시제품을 또 다른 실소유업체 (주)○○테크에서 제작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연구비를 횡령하고, 과제에 참여하지도 않은 피신고자의 자녀 등을 참여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를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조명(주), (주)○○테크의 실소유주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원을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를 편취하고, 허위 거래명세서로 발급받아 재료구입비 명목으로 연구비를 편취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59차례에 걸쳐 3억 2,324만 원의 정부보조금을 편취·횡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연구 데이터를 조작하여 허위의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수법으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 ○○부, ○○부,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대검찰청 수사결과, 연구개발비 4억 1,250만 원 횡령 및 편취 혐의로 기소
※ 통보일자 : 2019. 1. 30.
 - ○○부 조사결과, 사업비 2,218만 원 환수, 참여제한 3년 조치
※ 통보일자 : 2018. 4. 11.
 - ○○부, ○○시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대검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부, ○○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14조·제347조·제355조·제356조, 보조금법 제22조·제33조·제40조·제41조·제42조
- **착안사항** : 보조금 지급 정산내역서, 실태조사 결과 등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금 등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3. 12.)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활동보조서비스 지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근로지원인 2명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근무시키거나 근로지원을 받은 것처럼 속여 근로지원인서비스 지원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2013.7.부터 2018.1.까지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거나 서비스 제공시간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금 약 5,62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며, 근로지원인에게 자신의 근로지원인 아닌 대학과 법인의 업무를 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지원인서비스 지원금 약 1,31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총 6,936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들에 대한 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8. 10. 29.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1의 근로지원인에 대한 과오지급분 147만 원 환수
※ 통보일자 : 2018. 7. 29.
 - ○○도 조사결과, 피신고자1에 대해 활동지원급여 1개월 제공 중지, 피신고자2에 대한 부당 이득금 41만 원(이자 10만 원 포함) 반환, 자격정지 8개월 처분
※ 통보일자 : 2019. 2. 7.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도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7조, 형법 제347조
- **착안사항** : 활동보조서비스 결제내역 등

군 부대의 동(銅)케이블 등 횡령 의혹

1분과위원회(2018. 3. 26.)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전기 케이블 등 약 1,000만 원 상당의 공용자산을 사적으로 매각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목격자의 진술과 현장사진 등을 통해 공용자산을 외부 업체에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부, ○○조사본부 각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조사본부 조사 중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횡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나목
- **착안사항** : 목격자 진술, 현장사진, 출입내역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비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8. 3. 26.)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가 ○○군이 발주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시공하면서 실제 사용하지 않은 건설 장비나 가 시설을 사용한 것처럼 꾸며 공사비를 과다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한 의혹



2.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공사비 편취에 대하여 과다 지급된 공사비 환수, 관련자 징계 및 행정처분 등 조치를 위하여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도 각 이첩



4. 처리결과

- 수사기관
 - 경찰청 수사 결과, 피신고자가 일부 구간에 설계와는 다른 장비를 사용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사비의 차액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최종설계변경에서 혐의내용에 대하여 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내사 종결
※ 통보일자 : 2018. 8. 6.
 - ○○도 조사결과, 최종설계변경에서 혐의내용에 대하여 사업비 정산(금 8,409만 원)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
 - 신분상 조치 : 2명(훈계 1명, 주의 1명)
※ 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공사 실무담당자와 책임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요구
※ 통보일자 : 2018. 10. 15.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도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제355조(횡령)등

○○지도사 배치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3. 26.)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3.1.경부터 2015.12경까지 ○○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등 12개 사업을 운영하면서, 인건비 및 거래업체에 지급한 보조금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약 3,400만 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등 다수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인건비를 되돌려 받거나 사업비, 임차료, 활동비, 감사비 등을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총 3,4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10개 사업 중 7개 사업 혐의 적발, ○○부 사업 포함 3개 사업은 증거불충분)
 - ※ 통보일자 : 2018. 12. 24.
 - ○○부 조사결과, 관련 내용에 대한 혐의를 확인할 수 없어 종결처리
 - ※ 통보일자 : 2018. 12. 27.
 - ○○시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교

- **적용법령** : 보조금법 제41조·제43조, 지방재정법 제97조·제98조, 형법 제356조
- **착안사항** : 신고자의 진술 등

지방자치단체 시설위탁업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4. 9.)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센터의 시설위탁업체의 대표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센터를 위해 연구비를 집행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거래업체로부터 연구비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약 2,200만 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 관련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는 2015.2.부터 2016.3.까지 거래업체들과의 계약을 통해 사업을 수행한 것처럼 사업비 2,220만 원을 송금한 후 이를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횡령한 의혹이 있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에 대한 혐의 확인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 통보일자 : 2018. 6. 29.
 - ○○시 조사결과, 개선명령 및 2,200만 원 반납 조치
 - ※ 통보일자 : 2018. 7. 27.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 **착안사항** : 신고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 관련자료 등

○○보존회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4. 9.)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1은 2017년도에 ○○사에서 보조금을 받아 ○○보존회의 ○○문화강좌 및 국제문화교류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 번도 강의를 한 적이 없는 피신고자2를 강사로 허위 등록하여 강의료를 지급하고, ○○보존회 해외연수 참여대상자를 ○○보존회의 회원이나 수강생이 아닌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들을 참여시켰으며, 교체한 적이 없는 약기비용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934만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2를 강사로 허위 등록하여 강의료를 지급 후 이를 일부 돌려받은 의혹, ○○보존회와 관련이 없는 자를 해외연수에 참여시킨 의혹, 교체한 적이 없는 약기를 교체한 것으로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934만 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조사결과, 부정수금액 592만 원 환수
 - ※ 통보일자 : 2018. 7. 16.
- **위원회 검토의견**
 - ○○도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97조
- **착안사항** : 강습내역, 보조금 지급내역 자료 등

사립학교법인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4. 9.)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고등학교 졸업생의 실제 취업률이 30~40% 수준이었으나 회사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등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취업률을 50~60% 수준으로 조작하여 금액 미상의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실장의 자녀, 친인척 등을 정교사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 절차 변경 등 위계에 의하여 업무를 방해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고등학교 졸업생의 실제 취업률이 30~40% 수준이었으나, 50~60% 수준이 되도록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등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1억 4,946만 원의 정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정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시험 1~2일 전 갑작스런 채점위원 변경 등 위계에 의해 채용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친인척 정교사 채용 비리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교육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교육청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교육청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231조·제234조·제239조·제347조, 보조금법 제40조
- 착안사항 : 취업률 관련 자료, 사업비 정산 내역 등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4. 23.)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1은 자신을 담임교사로 피신고자2 등 시간제교사를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고 지급된 근무환경개선비 등을 편취하였고, 피신고자2등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보조교사로 허위 등록하고 이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등을 돌려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1은 2014.3.경부터 2018.2.경까지 자신을 담임교사로 허위등록하고 기본보육료 등을 교부받거나 피신고자2 등 시간제교사 3명을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고 이들에게 지급된 근무환경개선비 등 8,385만 원을 돌려받아 편취하였고, 피신고자2 등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보조교사로 허위 등록하고 이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등 3,877만 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총 1억 2,263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피신고자3은 시간제교사들의 허위등록 여부 등을 실제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방임하여 묵인 또는 은폐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들에 대한 혐의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이건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8. 10. 3.
 - ○○시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4조, 보조금법 제33조·제40조, 지방재정법 제97조
- **착안사항** : 보조금 지급 내역서 등

한부모가족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4. 23.)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 2명과 함께 동거하는 등 부양의무자인 배우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영업으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숨긴 채 한부모가족 지원금 등을 부정하게 교부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배우자는 ○○주식회사 등의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고 피신고자 또한 자영업으로 소득이 있음에도 보장기관에 혼인 및 소득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숨긴 채 한부모가족 지원금 및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혐의 확인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8. 7. 20.
 - ○○시 조사결과, 혐의사실 확인되어 고발조치 및 부정수급한 정부지원금 1,144만 원 환수 조치
※ 통보일자 : 2018. 6. 21.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형법 제347조
- **착안사항** : 한부모가족 지원금 등 지급 내역, 국민연금 조회자료 등

사회복지시설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4. 23.)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1,2는 ○○사회복지재단이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복지관에 재직했던 자들로, 납품단가를 부풀리고, 동일업체로부터 동일물품을 연 10회 이상 구매하는 등 업체와의 결탁 등을 통해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복지관에서 물품구입 및 공사 등을 진행 시 단가를 부풀려 결제하였고, 여러 사업을 진행하며 영수증 1개를 증빙자료로 중복 활용하였으며, 물품 구매 시 단가를 부풀린 후 차액을 횡령하는 방법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 1억 2,800만 원의 법인전입금과 피신고자1을 위한 7,6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조성하여 모두 약 2억 400만 원의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들의 횡령 및 업무상 횡령 혐의 인정되어 기소 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8. 12. 11.
 - ○○시 조사결과, 피신고자들의 보조금 횡령 사실 인정되어 부정수금액 2억 1,619만 원 환수 및 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해지 결정
※ 통보일자 : 2019. 2. 7.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 지방재정법 제32조·제97조
- **착안사항** : 보조금 정산내역, 관련 자료 등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4. 23.)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스템의 대표자로, 배우자 ○○○와 공모하여 2016.5.부터 2017.12 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부로부터 60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참고인들의 진술 및 제출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 회사에 근무하였던 참고인들이 피신고자의 배우자가 근무하지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신고자의 배우자 ○○○가 60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고자의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하여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조사결과, 부정수금액 960만 원 환수
 - ※ 통보일자 : 2018. 8. 9.
- **위원회 검토의견**
 -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고용보험법 제11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9조
- **착안사항** : 육아휴직급여 지급내역 자료 등

공립중학교 공무원의 공금횡령 의혹

1분과위원회(2018. 4. 23.)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학교에서 발생한 헌 교과서, 폐기 책상, 폐지 등의 재활용품을 재활용품 수거업체에 판매하고 그 금액을 횡령한 의혹



2. 의결이유

- 피신고자 근무기간 중 재활용품 판매대금 세입현황 및 피신고자의 일부 자인하는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약 100만 원 상당의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임



3. 의결결과

- ○○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청에서 검찰청으로 이첩하고, 현재 수사 중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

관급공사 공공예산 편취 의혹



1. 의안개요

- 피신고자가 지방계약법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지 않고 부풀려진 조달청 단가를 근거로 지오그리드 구매 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19,000만 원 상당의 지오그리드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계약법」에 따른 거래실례가격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계약금액 약 19,000만 원 대비 65%에 해당하는 약 12,3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조사결과, 1명 문책
 - ※ 통보일자 : 2018. 7. 30.
- **위원회 검토의견**
 - ○○도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착안사항** : 신고자 제출 증거자료, 거래실례가격 조사 내역 등

IC 건설 공사비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8. 4. 23.)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가 00건설(주)로부터 '00도시 진입을 위한 00IC 건설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하도급 받아 수행하면서 사토 운반량을 부풀려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공공기관 예산 편취 의혹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실제로 사토를 운반한 양보다 많은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여 부풀린 금액을 지급한 후 부가세(공급가액의 10%)와 수수료(공급가액의 3%)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액을 되돌려 받거나, 신고자에게 부풀린 공사비 중 부가세와 수수료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사토 운반 비용 11,011만 원(부가세 포함)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 ○○부로 각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검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 구속 및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 : '18. 7. 13.
 - ○○부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검찰청 수사결과 수용하고, ○○부 조사결과 확인·검토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 **착안사항** : 세금계산서, 부가세 등

청소업체 용역계약조건 부당 변경 등 의혹

1분과위원회(2018. 4. 23.)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해당 구청의 청소대행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당초 계약조건을 청소대행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하여 대행업체로 하여금 60,000만 원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한 의혹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를 포함한 해당 구청 청소행정과 소속 대행업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조사결과, 2차 입찰공고의 계약조건 변경이 지방계약법 위반 사항이 아니나 「○○시 일반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을 미준수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위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해당구청에 대하여 ○○시 행정감사규칙 제19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주의 요구' 처분
 - 위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사항으로 '주의 조치'함
※ 통보일자 : 2018. 8. 13.
- **위원회 검토의견**
 -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지자체의 휴대폰요금 부당지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5. 14.)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경비 등 직무수행에 따른 활동비 명목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개인 휴대폰 사용요금을 동일 목적으로 이중 지급받아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개인 휴대폰 기기대금 및 통신요금을 지자체의 공공운영비로 지출한 것은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의 지침에 어긋나므로 피신고자들에게 지급된 휴대폰 기기대금 및 통신요금 환수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위하여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조사결과, 시 감사관실에서 휴대폰 요금지원 관련 공문 시행(2016. 11. 21.) 이후 지원분을 회수(186만 원)하고, 사용용도의 확인 없이 예산을 지출한 담당자에 대하여 훈계 조치 요구
※ 통보일자 : 2018. 8. 3.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범위를 축소하여 환수조치를 취한 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재조사요구



5. 비고

- **적용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나목
- **착안사항** : 관련 지침, 공공운영비 지출자료 등

공공기관 연구원의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 의혹

1분과위원회(2018. 5. 14.)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연구원들이 거래업체들로부터 뇌물 수수한 의혹이 있고, 공모에 의해 용역비를 편취한 의혹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회에 걸쳐 거래업체로부터 1,799만 원을 전달하여 관리하도록 한 사실과 용역비 842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업체직원으로부터 그 중 192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로 각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및 ○○부, 수사 및 조사 중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착안사항 : 용역비 등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5. 14.)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17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부, ○○부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를 편취하거나 자영업 종사자, 연구과제와 무관한 전공 출신자나 다른 회사에 재직 중인 자를 참여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액 미상의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2017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자영업 종사자, 연구과제와 무관한 전공 출신자 등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2억 8,782만 원의 정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부, ○○부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교

-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제356조, 보조금법 제40조
- **착안사항** : 사업계획서, 최종 정산 보고서 등

주민지원사업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5. 14.)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항공소음 피해 주민지원사업’ 보조금 2,045만 원을 지원받아 주민 공동사용 목적의 반신욕기를 마을회관에 설치하면서, 견적가격이 1,701만 원임에도 ○○미디어(노래방기기 취급 업체)로부터 2,045만 원에 구입하고 차액 344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부정 혐의는 제조사의 견적서 가격이 실제로 1,700여 만 원이라는 사실 및 인근 마을 2곳에서도 할인이 가능한 제품의 제조사가 아닌 ○○미디어에서 동일하게 제품을 구입하였다는 사실로 보아, 피신고자들이 제품 가격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차액 344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조사결과, 보조금 횡령 사실에 대한 증거 불충분(견적 부풀리기 증거 부족), 단, 수익계약 부분은 부적절하여 담당공무원 1명 주의 조치
 - ※ 통보일자 : 2018. 8. 23.
- **위원회 검토의견**
 -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 지방재정법 제97조
- **착안사항** : 보조금 지급 정산내역서, 비교 견적서, 사업관련 자료 등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5. 14.)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1은 ○○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원장이나, 실제로는 동생인 피신고자2가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였으며, 피신고자2는 보육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배우자 ○○○를 시간연장 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1은 서류상 원장이나 실질적으로 동생인 피신고자2에게 운영권을 넘긴 후 출근하지 않으면서 교사 겸직 원장으로 허위 보고하는 방법으로, 피신고자2는 보육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도 병행하여 수행하는 배우자 ○○○를 월급여형 시간연장 교사로 허위 보고하는 방법으로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 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어린이집 보조금 약 1,824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가 확인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 통보일자 : 2018. 9. 5.
 - ○○시 조사결과, 혐의사실 확인되어 어린이집 운영정지, 고발조치 및 부정수급한 보조금 1,824만 원 환수조치
 - ※ 통보일자 : 2018. 7. 13.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교

- **적용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4조,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40조
- **착안사항** : 보조금 지급 내역, 관련 자료 등

지역자활센터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5. 14.)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지역자활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1.경부터 2017.2.경까지 자활센터 내 청소 사업단에 근무하지 않은 ○○○ 등 3명을 청소사업단 참여자로 허위 등록하여 이들의 급여 등을 부정하게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자활기업과 청소용역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의도적으로 계약금액을 낮춰 이로 인한 차액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청소사업단 참여자들을 허위 등록하여 급여 등을 부정하게 교부받아 편취한 의혹이 상당하고, 피신고자가 일부 자활기업과 체결한 청소용역 대행계약의 계약금액이 낮게 체결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에 대한 혐의점이 없어 내사종결
※ 통보일자 : 2018. 8. 14.
 - ○○도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비위행위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대행계약 체결 시 일정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도록 개선요구 처분
※ 통보일자 : 2019. 1. 14.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교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제356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 **착안사항** : 용역 관련 발주기관 홈페이지 공시자료 등

국민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5. 14.)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주)○○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각종 상여금 및 수당 등을 동생의 계좌로 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속이고 1,349만 원의 조기노령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참고인들의 진술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의 관리직원들이 피신고자가 상여금 및 수당을 동생 계좌로 지급받는 사실에 대해 알면서도 지급한 점, 피신고자가 (주)○○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국민연금공단이 제시한 기준액을 실제로는 초과하나 미달하는 것처럼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1,349만 원의 조기노령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혐의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8. 10. 8.
 - ○○부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교

- **적용법령** : 국민연금법 제57조·제128조·제130조
- **착안사항** : 국민연금 지급내역 자료 등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창업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5. 14.)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4. 9.경부터 2015. 3.경까지 ○○부의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청년창업자로 선정되어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미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직원 2명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정직원으로 등록한 후 ○○진흥원으로부터 이들의 인건비 등 보조금 수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4. 9.경부터 2015. 3.경까지 이미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직원 2명을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지원과제를 위해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정직원으로 등록한 후 해당 지원과제를 수행하지 않은 이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흥원으로부터 인건비, 외주용역비, 창업활동비 등 보조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8. 8. 16.
 - ○○부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보조금법 제40조, 형법 제347조
- **착안사항** : 사업계획서, 최종보고서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5. 28.)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들이 노인복지센터로 등원하지 않거나 월 1~2회만 등원하였음에도 매일 등원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고, 운전원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등록하였으며, 수급자들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수급자들에게 주야간보호서비스를 미제공하거나 실제보다 일수·횟수를 늘려 청구하고, 운전원의 근무시간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으며,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제공한 것으로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3,895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시, ○○공단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8. 9. 17.
 - ○○시 조사결과, 과태료 150만 원, 업무정지 136일 처분
※ 통보일자 : 2018. 4. 19.
 - ○○공단 조사결과, 3,895만 원 환수 조치
※ 통보일자 : 2018. 8. 6.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시, ○○공단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43조
- 착안사항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 관련자료 등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5. 28.)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공모하여 2017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원격훈련으로 교육을 실시 하면서, 근로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일괄 관리하여 직원들의 교육을 대리 수강하는 방법으로 훈련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공모하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위탁훈련을 실시하면서 평가문제와 답안을 사업주에게 제공하거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일괄 관리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대리수강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처럼 속여 훈련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들의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 통보일자 : 2018. 12. 13.
 - ○○부 조사결과, 훈련부정 사실이 확인되어 추가징수 포함 4,348만 원 환수 처분
 - ※ 통보일자 : 2018. 12. 20.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 **착안사항**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5. 28.)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6. 2.경부터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일주일에 약 2~3일만 출근하였음에도 상시 근무한 것으로 허위 보고하거나, 장기 결석한 아동들에 대해 출석한 것으로 출석부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로부터 인건비 등 보조금 수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6. 2.경부터 2017. 12.경까지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일주일에 약 2~3일만 출근하였음에도 상시 근무한 것으로 허위 보고하거나, 장기 결석한 아동들에 대해서도 출석한 것으로 출석부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로부터 급여, 아동급식비 등 총 6,1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도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아동복지법 제61조, 보조금법 제40조, 형법 제347조
- **착안사항** : 보조금 지급현황, 관련자료 등

○○공연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5. 28.)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청 등으로부터 201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공연지원금을 받아 연 2~3회 공개 행사 및 기획공연을 하면서, 출연자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고 은행입금표를 조작 및 출연자들의 서명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청 등에 거짓으로 정산보고를 하여 수천만 원의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청 등으로부터 국고보조금 약 1억 원을 지원받아 총 14건의 공연행사를 진행하면서, 출연자들에게 약 1,000만 원만 출연료로 지급하고 정산서류에는 약 6,000만 원의 출연료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보조금 약 5,000만 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정황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종결(동일 사건, 동일 대상자에 대해 검찰 기 처분)
 - ※ 통보일자 : 2018. 8. 20.
 - ○○청 조사결과, 미출연자 출연료 과오지급분 환수, 국고보조금 정산 미흡에 따른 경고 조치 및 개선요구
 - ※ 통보일자 : 2019. 1. 14.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청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교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22조·제33조·제40조
- **착안사항** : 보조금 정산내역, 관련 자료 등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5. 28.)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어린이집의 원장과 원감으로, 담임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담임교사 인건비 및 수당 등을 편취하거나,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교사들에게 출석아동들의 출석부를 조작하도록 지시하여, 실제 출석일수와 다르게 정부지원보육료를 부정하게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2는 2016. 7.부터 2018. 4.까지 담임으로 등록하였으나, 평가인증 당일 오전에만 수업에 들어가는 등 담임교사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서 4,870만 원의 담임교사 인건비 및 수당 등을 편취하였고, 피신고자1은 2015. 6.부터 2017. 7.까지 11일 미만 아동들의 출석부를 조작하여 정부지원보육료 190만 원이 과다지급되도록 하는 등 총 5,060만 원의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들의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 인정되어 기소외건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8. 10. 30.
 - ○○도 조사결과, 피신고자들의 출석부 조작·인건비 편취 혐의 인정되어 보조금 4,406만 원 환수 및 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처분
※ 통보일자 : 2019. 1. 15.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도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교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4조·제55조
- **착안사항** : 보조금 지급내역, 관련 자료 등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5. 28.)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농업회사법인 대표로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금액 미상의 농업보조금을 지원 받아 ○○체험관을 신축한 뒤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로 제공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보조금으로 신축한 ○○체험관을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하여 취득한 금액을 피신고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9. 1. 22.
 - ○○도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교

-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 보조금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9
- **착안사항** : 사업계획서, 보조금 지급 정산내역서 등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5. 28.)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장애인복지법인 산하시설 소속 생활지도원에게 재단 이사장의 농경지를 경작하게 하거나, 생활지도원이나 위생원을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수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농경지를 경작하거나 재단 기획실장으로 근무한 직원들을 생활지도원 또는 위생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2억 7,546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들이 종사자 인건비를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8. 9. 3.
 - ○○시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22조·제40조, 지방재정법 제32조·제97조
- **착안사항** : 보조금 정산내역, 관련자료 등

공립대 교수의 실험실습 기자재 절도 등 부패행위 의혹

1분과위원회(2018. 6. 11.)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실험실습기자재 18건(구입가격 16,737만 원) 절취한 의혹과 00대학교의 재물조사 시 실험실습기자재 18건이 망실(절취)되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한 의혹 등 재물조사 업무 방해 의혹 및 같은 대학교의 공전자 기록 위작* 의혹
- * 공전자 기록위작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하는 죄를 말함.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2017. 1. 12. 공과대학장에게 보낸 '실험실습기자재(토목공학과) 조사 결과 통보'에서 위 실험실습기자재들이 모두 있는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였고, 2017. 2. 20. 재무과장에게 관리하던 위 망실 실험실습기자재 18건 중 14건(구입가격 12,933만 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불용물품목록을 작성하여 불용처리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서를 발송하여 다음날 2013. 3. 28. 구입한 압밀시험기(구입가격 873만 원)를 제외한 나머지 13건(구입가격 12,060만 원)에 대해 불용처분 승인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대검찰청 및 ○○부에서 수사 및 조사 중



5. 비고

- 적용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착안사항 : 물품대장 등

공공기관 직원의 뇌물수수 의혹

1분과위원회(2018. 6. 11.)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공사직원이 2016. 1. 15.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업체대표의 보증채무 약 31,500만 원을 조건부 채무면제 해주는 대가로 ○○업체대표로부터 제3자 계좌를 이용하여 뇌물 7,500만 원을 수수하였고, ○○업체 대표는 피신고자1에게 같은 금액의 뇌물을 공여한 의혹



2. 의결이유

- ○○업체대표가 2016. 10. 31. ○○공사에 위 2건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 조정신청을 하였고, ○○공사가 2016. 12. 23. 피신고자2의 위 2건의 채무에 대하여 조건부 채무조정 승인을 하여 ○○저축은행이 2017. 3. 20. ○○업체대표에게 조건부 채무조정 확인서를 발송하였으며, ○○공사직원의 지인의 계좌로 7,5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 ○○회로 각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대검찰청과 ○○회 수사 및 조사 중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예금자보호법
- 착안사항 : 관련자료 확인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6. 1.)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2.경부터 온라인 광고업체 (주)○○에 근무하거나 (주)△△를 직접 운영하면서 매월 300~600만 원의 근로소득 등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을 부정하게 교부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2.1.경부터 2018.3.경까지 온라인 광고업체 (주)○○ 등에 근무하거나, (주)△△를 직접 운영하면서 매월 300~600만 원의 근로소득 등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는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 연금 등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과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해당 가구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8. 10. 8.
 - ○○시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어 기초생활보장급여 664만 원 환수 처분, 기초생활보장 중지 처리
※ 통보일자 : 2018. 8. 21.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교

- **적용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보조금법 제40조, 형법 제347조
- **착안사항** :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내역, 관련자료 등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부패 의혹

1분과위원회(2018. 6. 11.)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철거업체인 ○○건설과 공모하여 면적조사 과정에서 슬레이트 철거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산정한 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 신청자로 하여금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철거업체가 재산상 이익을 취하도록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면적조사는 슬레이트 지붕 해체 전 처리면적을 산출하는 것으로, 면적조사를 통해 공사금액이 산출되므로 공무원, 철거업체, 신청자의 입회 하에 정확한 면적조사가 필요함에도 피신고자는 자신의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철거면적 과다계상을 통한 국가 보조금 누수를 방치한 의혹이 있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부,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도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부,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지방공무원법 제48조
- 착안사항 : 보조금 지급 정산내역서, 실태조사 결과 등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6. 25.)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상호 공모하여 자가용 화물차 및 업무용 승용차에 주유하고 외상장부에 기록한 후, 영업용 화물자동차 4대에 지급된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수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상호 공모하여 자가용 화물차 및 업무용 승용차에 주유하고 외상장부에 기록한 후, 영업용 화물자동차 4대에 지급된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2,523만 원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들이 상호 공모하여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사실 확인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 통보일자 :
 - ○○도, ○○시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도 및 ○○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 **착안사항** :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관련자료 등

기초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6. 25.)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1.1.경부터 2017.2.경까지 ○○군 소재 ○○ 식당에서 주방 조리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는 방법으로 ○○군으로부터 기초연금 수천만 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1. 1.경부터 2017. 2.경까지 ○○군 소재 ○○ 식당에서 주방 조리책임자로 상시 근무하면서 월 평균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이를 현금으로 수령하여 숨기는 방법 등으로 ○○군으로부터 기초연금 1,043만 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9. 2. 12.
 - ○○도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기초연금법 제28조, 보조금법 제40조, 형법 제347조
- **착안사항** : 신고자의 진술, 관련자료 등

○○문화학교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6. 25.)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7. 4.부터 2017. 12.까지 ○○진흥원에서 지원한 ‘○○문화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실제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결강한 강사들의 출강확인서를 다른 강사에게 대신 작성하게 하여 강사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한 후 개인통장으로 돌려받고, 업체와의 결탁을 통해 금액을 부풀려 약기수리비 예산 등을 과다 집행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문화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출강하지 않은 강사를 출강한 것처럼 꾸며 강사료를 지급한 후 강사들로부터 898만 원을 돌려받아 인건비를 편취하였고,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하면서 전세버스 임차료를 과다하게 지출한 후 금액 미상의 차액을 편취한 의혹이 있으며, 약기수리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집행하여 그 중 일부를 피신고자 소속 협회의 약기수리비 등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는 등 정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정황이 상당하므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보조금 편취 혐의 인정되어 기소외건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8. 11. 14.
 - ○○부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 보조금법 제22조·제33조·제40조·제41조
- **착안사항** : 보조금 정산내역, 관련 자료 등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6. 25.)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국외 소재 국제학교에서 강사 등으로 근무하여 소득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자녀 ○○○와 함께 외국으로 건너간 이후 한국에는 관할 주민센터의 점검 시에만 잠깐씩 방문했음에도 한국에 계속 거주하는 것처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금액 미상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국외 소재 국제학교의 외국어파트 강사로 재직하며 월 500만 원 상당의 소득이 있음에도 이를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은닉하였으며, 자녀 ○○○이 해외장기체류자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보장대상 제외가구원에 해당함에도 자녀가 미국 여권소지자임에 따라 출입국기록이 연계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보장대상 가구원으로 신청하는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약 3,200만 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조사결과, 피신고자와 자녀의 해외장기체류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금액 2,914만 원 환수
 - ※ 통보일자 : 2018. 9. 7.
 - 경찰청 수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경찰청 수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제46조·제49조
- **착안사항** : 기초생계급여 지급내역, 소득 관련 자료 등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6. 25.)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농업회사법인 대표들로, 2015년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2015.10.경 공사원가계산서 작성 시 이윤의 비목에 포함되지 않는 재료비를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약 1,100만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15.8.부터 2015.12.까지 '2015년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윤 산정 시 재료비를 제외하여야 함에도 이를 포함하여 정상이윤 797만 원을 1,933만 원으로 과다 계상·청구하여 1,136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조사결과, 과다청구한 사실 확인되어 환수 조치
 - ※ 통보일자 : 2018. 9. 17.
- **위원회 검토의견**
 -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보조금법 제40조, 지방재정법 제97조
- **착안사항** : 신고자의 진술, 관련 자료 등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6. 25.)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승마클럽 대표자로, 2016년 말산업육성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대마장 및 소마장의 모래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수백만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및 모래량 현장계측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2016.10.부터 2016.12.까지 '2016년 말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대마장 및 소마장에 실제 사용한 모래량(601 m³)보다 399m³를 부풀린 1,000m³의 모래를 사용한 것처럼 정산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2016. 12.경 모래량 399m³에 해당하는 모래 가격 4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조사결과, 모래량 과다정산에 따른 보조금 470만 원 환수 조치
 - ※ 통보일자 : 2018. 9. 28.
- **위원회 검토의견**
 -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보조금법 제40조, 지방재정법 제97조
- **착안사항** : 신고자의 진술, 모래량 현장계측 등

스마트공장 구축사업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6. 25.)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주)○○ 대표이사로 2017.9.부터 2017.12.까지 정부출연금 5천만 원을 교부받아 약 1억 원의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수행하면서 거래업체와 공모하여 단가를 부풀려 사업비를 지급한 후, 차액 약 5천만 원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는 본 건 과제를 수행하면서 거래업체와 공모하여 단가를 부풀려 사업비를 집행한 후 부풀려진 자부담금 약 5천만 원을 자사에 필요한 물품으로 대신 납품받는 방법으로 편취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부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40조
- 착안사항 : 신고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 관련자료 등

아동급식도시락 지원사업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6. 25.)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주)○○ 대표자로, 2015년부터 2년 간 아동급식도시락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 외적인 용도로 주유를 한 후 사업비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약 1,200만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및 관련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아동급식 도시락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총 29회에 걸쳐 사업 외적인 용도로 주유를 한 후 사업비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1,200만 원 상당의 유류비를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조사결과, 부당하게 정산된 유류대금 1,200만 원 환수 조치
 - ※ 통보일자 : 2018. 8. 1.
- **위원회 검토의견**
 -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제97조
- **착안사항** : 신고자의 진술, 관련자료 등

창업성장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6. 25.)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어플리케이션 및 서버 개발을 주 업무로 하는 '○○'의 대표자로, 2016.12.부터 2017.12.까지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면서 참여연구원 3명과 허위의 근로계약을 작성한 후, 인건비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수천만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 관련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는 2016.12.부터 2017.12.까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3명의 연구원에 대한 내부인건비 3,960만 원을 편취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8. 9. 26.
 - ○○부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40조
- **착안사항** : 신고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 관련자료 등

도립교향악단 직원의 부패행위 의혹

1분과위원회(2018. 7. 16.)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1은 도립예술단의 순회공연 시 1명의 단원이 불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사로부터 약 290만 원 상당의 출장비를 환수하지 않았고, 피신고자2는 도립예술단 정기공연 등을 위하여 임차하는 차량계약을 일반입찰에 부치지 않고 기존업체인 개별화물에 기존과 동일한 단가로 용역비를 지급함으로써 특혜를 준 의혹



2. 의결이유

- 피신고자1은 외국 순회공연에 불참한 1명의 단원에 대한 여비 약 290만 원을 여행사로부터 현재까지 미회수 하였고, 피신고자2는 공연용 화물차량 임차 용역에 대하여 별도의 입찰공고 없이 동일업체와 전년도와 동일한 단가로 계약금액을 집행하여 지방계약법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조사결과
 - 재정적 조치 : 부당하게 집행된 국외여행경비 271만 원 회수
 - 행정상 조치 : 공연용 화물차량 임차계약 미이행 등과 관련하여 주의 처분
 - ※ 통보일자 : 2018. 8. 22.
 - 신분상 조치 : 담당자 3명 훈계 처분
 - ※ 통보일자 : 2019. 3. 18.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 조사결과 확인·검토 중



5.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관급공사 업체의 공사비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8. 7. 16.)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이 사건 공사의 행정관리동 및 강의동 출입문 창호후레임의 보강을 위해 설치한 보강재의 두께가 1.6T로 설계되었음에도 규격에 맞지 않은 1.2T를 납품하여 시공하였고, 물품검수 및 시공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를 묵인한 의혹



2. 의결이유

- 피신고자1이 총 516개소 중 55개소에서 1.6T를 1.2T로 시공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신고자 2~5는 피신고자1로부터 납품된 보강재에 대한 검수업무 등을 소홀히 하여 55개소에 규격 미달의 자재를 시공하도록 한 것을 확인



3. 의결결과

-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조사 중



5.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음식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계약 위반 의혹

1분과위원회(2018. 7. 16.)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폐기물처리 업체 대표로, ○○구청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여 ○○구청에 손해를 가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업체 직원들의 진술 및 수거차량 운행일지, 음식물쓰레기 허위처리 모습을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의혹이 있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조사결과, 허위처리 음식물류 폐기물량은 594,649kg으로, ○○구청에 6,351만 원의 손해를 가한 사실이 확인되어 계약조건에 따라 손해를 가한 금액의 2배인 12,702만 원을 환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관련 공무원 주의 조치 요구
 - ※ 통보일자 : 2018. 11. 19.
- **위원회 검토의견**
 -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나목
- **착안사항** : 음식물 수거차량 운행일지 등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7. 16.)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 농민들로, 2017.6.경 ○○시로부터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의 보조 사업자로 선정되어 금액 미상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나, 이를 자신들의 경작지에 설치하지 않고 다른 농가에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이 자신의 경작지에 ○○설비를 설치한다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다른 농가에 설치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들에 대한 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 통보일자 : 2018. 10. 5.
 - ○○부 조사결과, 농업보조금 1,807만 원 환수
 - ※ 통보일자 : 2018. 12. 4.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제32조의9·제97조
- **착안사항** : 사업계획서, 보조금 지급 정산내역서, 사업관련 자료 등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 비용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7. 16.)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1은 피신고자2와 공모하여, 실제로는 활동보조인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친인척 관계인 피신고자2를 활동보조인으로 등록하고 활동지원급여 중 일부를 되돌려 받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1은 피신고자2가 활동지원급여 지원이 제한되는 가족관계임에도 그 사실을 관할구청에 알리지 않고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여 2013.1.부터 2017.12.까지 총 7,491만 원을 부정수급하고, 피신고자2는 피신고자1과의 가족관계를 부인하는 확인서를 관할구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신고자1의 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을 공모한 의혹이 있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조사결과, 부정수금액 8,617만 원 환수, 서비스 제공기관 주의 조치
※ 통보일자 : 2018. 9. 28.
 - 경찰청 수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경찰청 수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5조·제47조, 형법 제347조
- **착안사항** : 신고자의 진술,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 비용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7. 16.)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1은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도 주소지를 다르게 하여 1인가구로 등재하고 추가급여를 받아 월 250시간 이상의 활동지원급여를 부정하게 받는 한편, 활동보조인을 자신이 운영하는 안마원에서 근로자로 사용하여 생업을 지원받고 있으며, 피신고자2 역시 활동보조인을 자신이 운영하는 안마원에서 근로자로 사용 중이고, 피신고자3은 실제로는 활동보조를 받지 않으면서도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 비용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모두 자신이 운영하는 안마원에서 활동보조인을 근로자로 사용하여 생업을 지원받음으로써 총 2억 3,166만 원에 이르는 활동지원급여를 편취한 의혹이 있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부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교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5조·제47조
- 착안사항 : 장애인활동지원비용 지원내역, 실태조사 결과 등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7. 16.)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서로 공모하여 2016.3.경부터 2018.2.경까지 ○○부로부터 지원받은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금 5억 9,300만 원 중 약 1억여 원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부 산하기관인 ○○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강사를 허위등록하고 증빙서류를 조작하여 인건비를 부정하게 수급하였으며, 이해관계에 있는 협회와 업체가 공모하여 수익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부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33조·제41조
- 착안사항 : 신고자의 진술, 인건비 지급내역 등

에너지기술개발사업 등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7. 16.)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2.11.경부터 2017.8.경까지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거래 업체로부터 연구과제와 무관한 장비 등을 구입한 후 연구비로 정산하고, 민간기업에서 용역을 받아 진행 중인 과제와 동일한 내용의 연구과제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수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2.6.경부터 2017.12.경까지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 과제와 무관한 장비, 가구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연구비로 정산하고, 민간기업의 용역으로 진행 중인 과제와 동일한 내용의 과제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총 2억 9천만 원의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부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제356조, 보조금법 제33조
- 착안사항 : 연구비 집행내역, 관련자료 등

산업기술혁신사업 등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7. 16.)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1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다수의 거래업체로부터 연구과제와 무관한 재료 등을 구입하고 연구비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1.9.경부터 2018.4.경까지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아 5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거래업체에서 연구과제와 무관한 다수의 물품을 구입한 후 이를 연구비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총 7,100만 원의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에 대한 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8. 11. 30.
 - ○○부, ○○부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33조
- **착안사항** : 연구비 집행내역, 관련자료 등

노인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7. 16.)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1,2는 ○○시 소재 노인종합복지관 관장 및 과장으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시설을 운영하면서, 무료급식 이용인원이 1일 20명~30명(평균 25명) 수준임에도 이용인원을 80명~90명(평균 85명)으로 부풀려 ○○시로부터 금액미상의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무료급식 이용인원이 20명~30명 수준임에도 바코드 자동 인식 프로그램에 이용인원을 80명~90명으로 부풀려 수동 입력하는 방법으로 ○○시로부터 7,200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도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지방재정법 제97조
- 착안사항 : 사업비 교부 내역, 사업비 정산 내역 등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7. 16.)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1,2는 2016. 3.경부터 2017. 12.경까지 (주)○○물류 소속 화물자동차의 유류구매카드를 일괄 관리하면서 피신고자3이 운영하는 (유)○○주유소에서 개인 자동차 및 보조금 지원량을 초과한 화물자동차에 주유하거나 차량축매제인 요소수 등을 구입한 후, 휴차 중인 화물자동차의 유류구매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여 허위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수천만 원 상당을 부정하게 교부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1~3은 2016. 3.경부터 2017. 12.경까지 (주)○○물류 소속 화물자동차의 유류구매카드를 일괄 관리하면서 개인 자동차 및 보조금 지원량을 초과한 화물자동차에 주유하거나 차량축매제인 요소수 등을 구입한 후, 휴차 중인 화물자동차의 유류구매카드로 허위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 등으로부터 유가보조금 7,865만 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아 편취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과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도, ○○시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도, ○○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교

- 적용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제44조의2, 형법 제347조
- 착안사항 : 유가보조금 지급현황, 화물자동차 주행거리 현황 등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7. 16.)

구 신고심사심리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최저임금 지급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아 편취하고, 보조금(관리운영비) 수백만 원을 직원 회식비 등으로 지출하여 용도 외로 사용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6.4.경부터 2017.12.경까지 시설의 장애인 10~19명에게 실제 하루 5시간 근로하도록 하고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하였음에도 최저임금 지급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하루 3시간 근로한 것으로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 약 6,430만 원을 지원받아 편취하였으며, 보조금(관리운영비) 107만원을 직원 회식비 등으로 지출하여 용도 외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8. 11. 9.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는 장애인들에게 하루 3시간 근로, 2시간 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어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는 해당되지 않음
※ 통보일자 : 2018. 10. 1.
 - ○○시 조사결과,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보조금 107만 원 환수
※ 통보일자 : 2018. 8. 23.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53조, 보조금법 제40조, 형법 제347조
- **착안사항** : 보조금 지급내역 및 정산결과, 현지조사 결과 등

어업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7. 16.)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국고보조금 9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0여억 원 규모의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을 설치하면서, 관리감독기관의 승인 없이 보조금지원 건축물, 기계, 시설 등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자부담을 한 것처럼 속이는 등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총 3회에 걸쳐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대출받은 자금 일부를 자부담내역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보조금 취득재산을 불법 담보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9. 1. 8.
 - ○○부, ○○도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부 및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97조
- **착안사항** : 보조금 지급 정산내역서, 사업관련 자료 등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8. 6.)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영농조합법인 ○○의 대표로서,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2차례에 걸쳐 보조금 약 9억 6,000만 원을 지원받아 가공품 생산시설 및 ○○재배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다가, ○○시의 승인 없이 지역 농업법인 등에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불법 임대 등을 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는 2009년과 2012년에 2차례에 걸쳐 농업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공품 생산시설과 ○○재배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다가 ○○시의 승인 없이 생산시설 등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보조금 투입 재산에 대해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한 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 통보일자 : 2018. 12. 12.
 - ○○도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보조금법 제35조·제41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9, 형법 제355조
- **착안사항** : 담보제공승인공문, 관련자료 등

사립대학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8. 6.)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08년부터 연구개발비 편취, 특정업체를 통한 자금 세탁, 연구개발비 횡령, 논문 대필, 취업률 조작, 부정입학에 관여 등의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1은 2008년부터 연구개발비 편취, 특정업체를 통한 자금 세탁, 연구개발비 횡령 등으로 모두 3억 1,880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고, 논문 대필, 취업률 조작, 부정 입학 관여 등의 혐의 사실이 확인되고, 피신고자2는 위 기간동안 연구개발비 472만 원을 부정하게 취득한 혐의 사실이 확인되며, 피신고자3,4는 피신고자3의 자녀가 입학자격 미달임에도 면접시험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위계에 의하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 사실 등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대검찰청, ○○부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대검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14조·제347조·제355조·제356조·제357조, 보조금법 제40조
- 착안사항 : 사업계획서, 최종 정산 보고서 등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8. 6.)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5.7.경부터 2017.7.경까지 연구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면서 회사 자체개발을 통해 국내외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평소 거래해오던 업체에서 구입한 재료나 제품 신뢰성 테스트비용 등을 연구개발비로 정산하거나 연구와 무관한 회사직원을 연구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익 원의 연구비를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연구비 정산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회사 자체개발을 통해 이미 판매되고 있는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신뢰성 테스트 비용 등을 연구개발에 사용한 것처럼 정산하고,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일반 직원을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연구원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총 3억 3,088만 원의 연구비를 횡령하여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부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교

- **적용법령** : 형법 제356조
- **착안사항** : 연구비 정산내역, 관련자료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8. 6.)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06.경 이미 개발되어 해외에 수출되고 있는 ○○개발을 연구과제로 신청하였고, 2015.경부터 2016.경까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것처럼 결과물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약 1억 7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관련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는 2015.12.부터 2016.11.까지 ○○진흥원에서 주관한 신제품개발 과제 사업자로 선정된 후, 자신의 가족이 2008.경 이미 개발하여 시판중인 ○○를 새로 개발한 것처럼 결과물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연구비 약 1억 7천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부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33조·제40조
- 착안사항 : 신고자의 진술, 관련자료 등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8. 6.)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부에서 실시한 ○○기술개발사업에 지원하면서 기 개발된 제품이 있음에도 신규로 개발하겠다고 속이고 신청하여 연구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실제로는 운영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 (주)○○의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법 등으로 금액 미상의 연구개발비를 교부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와 참고인의 진술, 전문기관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들은 이미 개발한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발하겠다고 속여 2016.4.부터 2018.3.까지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5억 원을 교부받았고, 허위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사업비를 집행한 것처럼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1억 9,25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부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40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
- 착안사항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 전문기관 제출자료 등

시민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8. 20.)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4년 ○○시로부터 3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책자 발간을 추진하면서, 실제로는 책자 발간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책자를 발간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3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4년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책자 발간을 추진하면서, 실제로는 책자를 발간하지 않았음에도 책자를 발간한 것처럼 출판인쇄소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3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들의 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 통보일자 : 2019. 1. 10.
 - ○○시 조사결과, 보조금을 부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총 3,844만 원 환수
 - ※ 통보일자 : 2019. 2. 11.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지방재정법 제97조
- **착안사항** : 사업계획서, 사업비 정산 내역, 최종 결과 보고서 등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8. 20.)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에 소재한 “○○”대표로, 직원들이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고 있음에도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액 미상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지원 기관에 허위로 신고했다는 신고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5개월 동안 총 130만 원 상당의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보조금법 제40조, 형법 제347조
- 착안사항 : 보조금 지급 내역,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자료 등

한우농가 지원사업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8. 20.)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협회 ○○시 지부장으로, ○○시로부터 헬퍼(축산농가 지원 전문도우미)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원받기도 실제로는 헬퍼를 고용하지 않고 허위의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등을 작성한 후 해당 급여를 되돌려 받아 사무원 ○○○의 인건비 등을 지부의 운영비 용도로 사용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실제로는 ○○○, △△△가 헬퍼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출근부, 연봉계약서를 만들어 이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거나, 헬퍼 □□□에게 지급한 유류비를 지부 사정을 내세워 되돌려 받고도 헬퍼 2명의 인건비, 4대보험료, 유류비를 정상 지급한 것처럼 정산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2016.10. 이후 총 13회에 걸쳐 1,773만 원의 지방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시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56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제32조의8·제97조
- 착안사항 : 보조금 지급 정산내역서, 실태조사 결과 등

FTA 컨설팅 지원사업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8. 20.)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소속 관세사의 출장에 동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장 정산 시 동반출장으로 허위 기재하여 출장비를 지급받거나, 내부직원이 컨설팅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외부관세법인에 다시 맡겨 처음 컨설팅을 실시한 것처럼 속여 외부용역비를 집행하고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이 실제로는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허위 정산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출장비를 지급받거나, 내부직원에게 의해 이미 보고가 완료되어 추가적인 컨설팅이 불필요한 것에 대해 외부관세법인에 다시 의뢰하여 처음 컨설팅을 실시하는 것처럼 속여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가 확인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9. 1. 16.
 - ○○도 조사결과, 출장비 부정수급 혐의가 확인되어 보조금 약 65만 원 환수 조치
※ 통보일자 : 2018. 11. 5.
 - ○○부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도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보조금법 제40조, 지방재정법 제97조, 형법 제347조
- **착안사항** : 보조금 정산 내역, 관련 자료 등

○○ 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8. 20.)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이미 개발되어 시판중인 ○○ 제조기술 및 시스템의 개발을 연구과제로 신청하고, 2017.경부터 2018.7.경까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것처럼 결과물을 조작하여 연구비를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7.6.부터 2018.7.까지 '○○ 기술개발사업'의 수행사업자로 선정된 후, 이미 개발하여 시판중인 ○○제조시스템을 새로 개발한 것으로 속여 연구비 약 1억 9,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부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33조
- **착안사항** :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8. 20.)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5. 8.부터 2018. 5.까지 질병을 이유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원받아 왔으나, 2012년경부터 2018. 8.까지 '○○공업'에서 근무하며 월 3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숨기고자 매월 급여 이체 시 회사대표 개인의 이름으로 이체 받고, 입금통장도 자녀의 통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하여 수천만 원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2년경부터 ○○시 소재 ○○공업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관할 기관에는 2014년도에 퇴사했다고 속이고, 자녀의 통장으로 매월 월급을 이체 받아 소득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2015. 8.부터 2018. 5.까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정황이 확인 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 검찰 송치
 - ※ 통보일자 : 2018. 12. 6.
 - ○○시 조사결과, 소득 은닉 사실 확인되어 부정수금액 3,835만 원 환수 결정
 - ※ 통보일자 : 2018. 11. 21.
 - ○○부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제46조·제49조·제51조
- **착안사항** : 기초생계급여 지급내역, 소득 관련 자료 등

선관위 공무원의 조합장 선거조작 비리 의혹

1분과위원회(2018. 9. 3.)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선관위 계좌가 아닌 자신의 개인 계좌번호가 기재된 선거지원경비 300만 원의 산출내역서에 권한 없이 ○○시 선관위 직인을 날인하여 ○○조합에 제출한 후, 해당 계좌로 입금 받고 권한 없이 ○○시 선관위 직인을 날인한 입금증을 발행하는 등 임무에 위배하여 선거지원경비 300만 원을 횡령한 의혹



2. 의결이유

- ○○도 선관위 공문, 선거지원경비 산출내역서 및 입금증 등을 종합해 보면, ○○조합 조합장 선거 지원에 서면 약정 체결이 없고, ○○시 선관위 계좌가 아닌 피신고자 개인 계좌를 기재한 선거지원 경비 산출내역서 및 입금증에 ○○시 선관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 ○○선관위 각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검찰청, ○○선관위 조사 중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56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방위산업물품 원자재 대금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8. 9. 3.)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방산업체에게 방산물품용 모터를 생산·공급하면서 원자재 공급업체에게 물품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원자재공급업체 등과 서류상 회사와의 허위거래를 통해 부풀려 지급한 대금을 되돌려 받거나, 일반 원자재를 방산 원자재로 속이는 수법으로 원자재 대금 약 623,700만 원을 편취한 의혹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2004년부터 2017년 4월까지 원자재공급업체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으면서 대금을 부풀려 약 1,200,00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원자재 공급업체와 서류상 회사와의 허위거래를 통해 약 580,0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신고자가 2014. 2. 19.부터 2015. 4. 16. 까지 152회에 걸쳐 거래처와 공모하여 일반 원자재를 방산 원자재로 속여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받아 방위사업청의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 등록하는 수법으로 약 36,0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약 620,000만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이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 ○○부, ○○청으로 각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대검찰청 수사, ○○부 및 ○○청 조사 중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착안사항 : 관련자료 확인

지자체의 휴대폰요금 부당지급 의혹 이첩사건 재조사 요구

1분과위원회(2018. 9. 3.)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경비 등 직무수행에 따른 활동비 명목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개인 휴대폰 사용요금을 동일 목적으로 이중 지급받아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부당지급 기간을 임의로 축소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환수조치를 한 점에 대해 신고자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재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시 재조사요구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재조사결과, 2013. 1.부터 2016. 11.까지 휴대폰요금 지원분 중 기기대금과 부가서비스 요금에 대해 전액 회수 조치(394만 원)
 - ※ 통보일자 : 2018. 11. 1.
- 위원회 검토의견
 - ○○시의 재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나목
- 착안사항 : 관련 지침, 공공운영비 지출자료 등

혁신형 창업기업양성 프로젝트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9. 3.)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7년경 ○○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한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거래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후 현금으로 돌려받아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7.8.경부터 2017.12.경까지 ○○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한 프로젝트 사업을 수행 하면서 거래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다른 사업의 유사한 결과물을 용역 결과물로 속여 제출하고,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받아 보조금 집행 후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1,800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 중
 - ○○도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 확인되어 2,000만 원 환수 조치, 참여제한 5년
※ 통보일자 : 2018. 11. 30.
- **위원회 검토의견**
 - ○○도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경찰청 수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56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제97조
- **착안사항**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조림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9. 3.)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1~9는 ○○시 및 ○○군에서 시행하는 조림사업을 대행하여 수행한 자로, 조림사업을 하면서 실제 조림을 실시하지 않은 산지분에 대하여 조림을 실시한 것처럼 면적을 부풀려 산정하여 ○○청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액 미상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시와 ○○군의 조림대장에 등록된 조림면적과 조림사업지 위성사진의 조림면적이 차이가 나는 점, 조림지를 현장 확인한 결과 조림대장의 시행면적과 실제 조림면적이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고자들은 조림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산지분에 대하여 조림을 시행한 것으로 등록하여 ○○시로부터 8,099만 원, ○○군으로부터 금액 미상의 조림사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상당하므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청, ○○도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청,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 **착안사항** : 위성사진, 보조금 지급내역 자료 등

건강보험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9. 3.)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인력들을 ○○요양병원의 병동 간호인력으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인력 15명 등을 ○○병원 정신과 및 ○○요양병원 병동의 간호인력으로 허위 등록하여 금액 미상의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상당하여 조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부, ○○도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 ○○도 수사 및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의료급여법 제23조·제3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115조
- **착안사항** :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 관련자료 등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9. 3.)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1,2는 ○○시 소재 ○○공동생활가정시설 시설장 및 사회복지사로, 2015.8.부터 2018.3.까지 공모하여 피신고자2가 위 시설에 전혀 근무하지 않거나 토요일만 근무하였음에도 출석부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금액 미상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등의 진술, 급여대장, 급여계좌 입출금거래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1,2는 공모하여 피신고자2가 2015.8.부터 2018.3.까지 △△시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상근직으로 근무하여 ○○시 소재 ○○공동생활가정시설에 근무할 수 없는 여건임에도 토·일요일 근무하는 것으로 출석부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6,279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도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보조금법 제40조
- 착안사항 : 고용보험자격이력, 관련자료 등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9. 3.)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6. 2.부터 2018. 7.까지 질병을 이유로 ○○시로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원 받아 왔으나, 외국인 노동자 2명을 고용하여 하우스 9개동 규모의 농원을 운영하면서 1천만 원의 월 매출액을 올리고, 판매대금을 타인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숨겨 수천만 원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08.경부터 ○○시에서 친환경야채를 생산하는 업종에 종사하였으며, 2016.경에는 외국인 노동자 2명도 직접 고용하여 농원을 운영하는 등 상당한 소득이 있음에도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원받기 위해 친환경야채 판매대금을 타인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이체 받는 방법으로 관할기관에 소득신고를 은닉하여 2016.2.부터 2018.7.까지 ○○시로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의료급여 약 4,250만 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정황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도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제46조·제49조
- 착안사항 : 기초생계급여 지급내역, 소득 관련 자료 등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9. 3.)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1급 시각장애인으로 ○○시로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장애인 연금 등을 지급받아 왔으나, 1톤 봉고트럭을 운전하고 방충망 수리 등을 하며 발생한 소득을 숨기고 금액 미상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 연금 및 장애인 활동보조비 등을 부정하게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1급 시각장애인으로 근로능력 없음이 인정되어 2010. 1.부터 2018. 7.까지 생계·주거급여와 장애인 연금을 지원받는 것은 물론, 2015년부터는 월 84만 원의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도 받고 있으나, 1급 시각장애인임에도 1톤 봉고트럭을 운전하고 다니며 방충망 수리를 하는 것이 확인되어 기초생활급여·의료급여·장애인활동보조비 등 모두 1억 1,500만 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시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장애인연금법 제15조·제17조·제25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제46조·제49조
- 착안사항 : 기초생계급여 등 지급내역, 근로소득 관련 자료 등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9. 17.)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부의 지원을 받아 참여기관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존 자사 양산품 생산에 필요한 재료를 기존 거래업체인 ○○ 업체 등으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속여 금액 미상의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시제품과는 무관한 기존 자사 양산품 생산에 필요한 외장용 배터리, 마스크, 회사 서버 보강 등의 명목으로 약 9,085만 원의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부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40조
- **착안사항** : 사업비 교부 내역, 사업비 정산 내역 등

사립대학교 의료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9. 17.)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부처 산하 각종 교부기관에서 ○○의료원 산학협력단에 지원한 연구개발 간접비를 관리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결제인 것처럼 영수증을 첨부한 뒤 본인 및 가족계좌로 간접비를 송금하거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금액 미상의 연구 개발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2009.9.부터 2018.5.까지 연구전자노트 추가 자료 책자, 부서 워크숍 펜션 예약비 등의 명목으로 마치 정상적인 결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영수증을 첨부한 뒤 본인 및 가족명의 계좌로 158회 송금하여 약 3,985만 원, 2015.1.부터 2018.6.까지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473회 사용하여 약 2,177만 원 등 모두 6,162만 원의 연구개발 간접비를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부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 착안사항 : 사업비 정산내역, 카드 사용내역 등

프랜차이즈업체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9. 17.)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대표로, 2017.7. 가맹본점에서 ○○진흥원의 ‘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화 지원사업’ 대상업체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중임에도, 재차 ○○부 지원 ‘맛집 프랜차이즈 사업화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중복 지원을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 3,000만 원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프랜차이즈 가맹본점이 2017.7. ○○진흥원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7.7. 동일한 내용으로 ○○시 ○○구의 지원사업에 재차 응모하여 선정됨으로써 보조금 3,000만 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고용노동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9. 2. 10.
 - ○○고용노동청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고용노동청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고용보험법 제35조, 형법 제347조
- **착안사항** :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공모 신청내역 등

아동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9. 17.)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1~3은 아동복지시설 전·현직 원장으로, ○○법인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한 ○○○와 학생 ○○○를 시설 생활지도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요양차 근무하지 않은 피신고자3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금액 미상의 인건비를 교부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1~3이 행정업무를 담당한 ○○○, 학생 ○○○를 시설 생활지도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 요양차 근무하지 않은 피신고자3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는 방법 등으로 인건비를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조사결과, 기관 개선명령 통보 및 보조금 143만 원 환수
 - ※ 통보일자 : 2019. 1. 23.
 - 경찰청 수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경찰청 수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아동복지법 제59조·제51조, 지방재정법 제97조
- 착안사항 : 보조금 지급 정산내역서, 관련자료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9. 17.)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14.10경 ○○시 소재 ○○스튜디오 직원으로, 회사 폐업에 따라 퇴사한 후 2014.10.경 다른 △△스튜디오에 입사하여 매월 수입이 있음에도 이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 수백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조건으로 입사한 후, 매월 약 200여 만 원의 일정액을 급여로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 착안사항 : 실업급여 수급내역 등

공공기관의 공무국외여행 비용 편취 등 의혹

1분과위원회(2018. 10. 8.)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시와 ○○시 소재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의 공무국외여행(17. 6. 27.~7. 9.)을 주선하면서 공모하여 항공료 E-Ticket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여비를 편취하였고, ○○원 부장은 위 사실을 보고받아 알았음에도 이를 묵인한 의혹



2. 의결이유

- 여행업체는 이 사건 해외출장을 위탁받아 주선하면서 ○○원 직원의 항공료 E-Ticket 2건을 위조하여 70만 원을 부풀려 청구·편취하였고, ○○시 직원 외 2명의 항공료를 ○○원의 동일 구간보다 333만 원 많게 청구·편취한 의혹과, ○○시와 ○○원 담당자는 위 사실을 묵인한 의혹이 있음을 확인하여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로 각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및 ○○도 수사 및 조사 중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 착안사항 : E-Ticket 및 출장자료 등 확인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10. 8.)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 소재 ○○방문요양센터 대표자로, 2018.1.부터 2018.8. 현재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는 일반 가사도우미에게 돌봄을 받는 수급자를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서비스를 수행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사회복지사는 방문·상담하지도 않은 수급자를 마치 방문하여 상담한 것처럼 업무수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단으로부터 금액 미상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공단의 현지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피신고자는 수급자 ○○○에게 실제로는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제공한 것으로 등록하고, 사회복지사 등이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약 1,158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공단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도, ○○공단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도, ○○공단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43조·제67조
- 착안사항 : 신고자의 진술, 관련자료 등

채용예정자 훈련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10. 8.)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사업주 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교육생을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수억 원의 지원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채용예정자를 교육과정에 허위로 등록하여 훈련지원금 약 3,200만 원을, 동일한 방법으로 타 교육과정에서도 훈련지원금 약 5억 원을 편취한 의혹이 확인되므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부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 착안사항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10. 8.)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5.5.부터 2017.5.까지 정부지원금 등 총 14억 3,000만 원 규모의 과제를 수행 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배우자, 자녀, 친인척이나 일반직원들을 연구원으로 등록하고 이들에게 연구수당이나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가 돌려받는 방법으로 수억 원 상당의 연구개발비를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연구비 정산내역서 등을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는 2015.5.경부터 2017.5.경까지 연구과제를 수행 하면서 연구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배우자와 자녀, 친인척, 퇴사자, 일반직원들을 연구원으로 등록하고 이들에게 연구수당과 인건비를 지급한 후 그 중 일부를 배우자의 통장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1억 9,868만 원, 일반 회사 제품에 사용된 재료를 연구용 재료비로 속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2억 1,000만 원을 횡령한 의혹이 상당하여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부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56조
- 착안사항 : 연구비 정산내역서, 관련자료 등

○○일자리희망센터 인건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10. 8.)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대표로 직원들이 다른 사업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희망센터 전담 인력으로 임면보고 후 목적 외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일자리희망센터 인건비를 부당하게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직원들이 ○○일자리희망센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추진 실적 및 정산자료를 제출하여, ○○일자리희망센터 사업비 3,629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고용노동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고용노동청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고용노동청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고용보험법 제35조, 형법 제347조
- **착안사항** : 2016년도 청년취업인턴제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 관련자료 등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10. 8.)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1은 2016.4.경부터 화물자동차 2대를 운용하면서 피신고자2의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할 때마다 10만 원 상당의 경유를 부풀려 외상 거래카드로 결제하고 주유소에 비치된 주유카드에 기록한 후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수천만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유가보조금 지급현황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공모하여 2016.4.경부터 ○○주유소에서 화물차에 주유할 때마다 10만 원 상당의 주유량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약 1,191만 원 상당을 부정하게 교부받아 편취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도, ○○도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도,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44조
- 착안사항 : 유가보조금 지급현황 등

○○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10. 8.)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1~8은 ○○연구소 및 산하기관 전·현직 이사장, 대표, 관장, 이사로서, 2013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정부보조금 수십억 원을 교부받아 약 수억 원의 불법 운영자금(법인 전입금)을 조성하여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부, ○○부,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퇴직금, 인건비, 운영비 등 법인 전입금 명목으로 매년 수천만 원씩을 부당하게 횡령한 의혹이 있으며, 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 후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부,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부, ○○부, ○○시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부, ○○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제356조, 보조금법 제33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제97조
- **착안사항** : ○○정책지원사업 자료 등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10. 22.)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공모하여 피신고자2 소속 직원들을 2018.2. 말 서류상으로 퇴사 처리한 후, ○○ 센터에서 수행하는 ○○일자리 전문인력양성과정 1기 교육생으로 허위 등록시키고 실제로는 정상근무를 하도록 하고, 피신고자1은 교육생(직원)들에게 교육일지나 간담회 서류에 허위로 서명을 하도록 요구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1은 ○○부 및 ○○도로부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비 5억 원을 교부받아 실제로는 진행하지 않은 간담회비, 실습재료비, 강사로 등을 집행한 것처럼 허위의 사업비 집행 내역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2018.4.부터 2018.8.까지 총 20건, 5,201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하고, 피신고자2는 피신고자1과 공모하여 자신의 회사에 재직중인 자들을 서류상 퇴사처리한 후 이 사건 훈련과정에 입소하거나 교육종료 후 자신의 회사에 입사한 것처럼 꾸며 피신고자1의 범죄행위를 도운 것으로 판단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부, ○○도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56조, 보조금법 제22조·제33조·제41조 등
- **착안사항** : 보조금 지급 정산내역서, 실태조사 결과 등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편취 등 의혹

1분과위원회(2018. 10. 22.)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1(○○진흥원 직원)과 피신고자2~4(가맹점주)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담당자와 문화상품 공급자로서, 문화상품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결제해야 함에도 치약, 칫솔 등 생필품 세트를 공급하는 등 금액 미상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과 제출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2~4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수행하면서 문화상품이 아닌 생필품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사업비 3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신고자1은 피신고자2~4의 부정사용을 알면서도 사업비(카드대금)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조사결과, 부정사용 및 부당이득이 확인되어 행정상 주의 18건, 신분상 조치 4건 및 7억 7,800만 원 환수 조치
 - ※ 통보일자 : 2018. 11. 21.
 - 경찰청, ○○부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도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보조금법 제30조·제40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형법 제347조·제356조
- 착안사항 : 2018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 등

시장창조지원사업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11. 5.)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7.5. (재)○○테크노파크와 시장창조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거나,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정산내역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과제 사업비를 (재)○○테크노파크로부터 교부받아 참여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거나,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거래명세서 등 정산서류를 만들어 제출하는 수법으로 총 2,731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시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제356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제32조의8·제97조
- 착안사항 : 보조금 지급 정산내역서, 실태조사 결과 등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11. 5.)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주)○○ 대표이사로 2017.3.부터 2018.5.까지 2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거래업체와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고, 사업비는 자사 제품생산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금액 미상의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 관련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는 2017.3.부터 2018.5.까지 2개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거래업체와 공모하여 실제 연구과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하거나 기존 미수금 변제에 사업비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약 2억 8천만 원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의혹이 상당하여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부, ○○부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제355조·제356조, 보조금법 제40조·제41조
- **착안사항**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 관련자료 등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11. 5.)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6.1.경부터 2017.2.경까지 ○○진흥원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 과제의 참여기관으로 연구하면서, 과제개발과 무관한 친인척 등을 회사 연구원으로 등록하고 이들에게 매월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억 원 상당의 연구비를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정산내역서, 관계기관 정산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는 2016.1.경부터 2017.12.경까지 ○○진흥원으로부터 과제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어 연구개발을 수행하면서, 연구와 무관한 친인척 등 8명을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매월 인건비 명목으로 10여회에 걸쳐 개인당 100만 원~35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억 2,226만 원의 연구비 횡령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부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56조
- **착안사항** : 신고자의 진술, 정산내역서, 관련자료 등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11. 5.)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1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타인명의로 조리사를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시로부터 금액 미상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피신고자2는 2017년 위와 같은 취업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부로부터 금액 미상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1은 ○○지역아동센터의 조리사를 타인명의로 허위 등록한 후 실제로는 자신의 배우자인 피신고자2에게 조리사 일을 대신하게 함으로써 ○○시로부터 ○○지역아동센터에 보조되는 조리사 인건비 565만 원을 부정수급하였고, 피신고자2는 위와 같은 취업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2017.1.부터 2017.8.까지 ○○부로부터 실업급여 911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조사결과, 피신고자들이 타인명의로 조리사를 허위 등록 후 인건비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 되어 565만 원을 환수하고 해당 시설에 대해 개선명령 처분
※ 통보일자 : 2018. 12. 28.
 - 경찰청, ○○부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도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고용노동법 제116조, 보조금법 제40조
- **착안사항** : 보조금 지급 정산내역서, 관련자료 등

일학습병행제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11. 5.)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7. 8.경부터 2018. 8.경까지 ○○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일학습병행제를 추진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위 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실제 현장교육훈련을 하지 않고 출석부를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단으로부터 금액 미상의 지원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7. 8.부터 2018. 6.까지 ○○공단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추진에 따른 지원금 1억 4,900만 원을 받아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일학습병행 훈련을 진행하면서 실제로는 현장교육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출석부에 일괄적으로 서명하도록 하는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단으로부터 훈련지원금 및 OJT비용 등의 지원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조사결과, 일학습병행제 지원금 부정수급 사실 확인되어 1,879만 원 환수 결정
※ 통보일자 : 2018. 11. 28.
 - 경찰청 수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경찰청 수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62조의3
- 착안사항 : 일학습병행제 지원금 지급내역 및 증빙자료 등

감사담당자의 허위사건 조작 및 상장수여 등 부패 의혹

1분과위원회(2018. 11. 5.)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경찰서 청문감사실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신고자1은 같은 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신고자2에게 친형의 사건을 청탁하고, 사건을 무마해 준 대가로 피신고자2에게 장려상을 수여하고자 허위의 공적을 보고함으로써 모범선형 경찰관 장려상 선발 업무를 방해함은 물론, 피신고자2에게 인사상 이익이 되는 뇌물을 공여한 의혹이 있음
- 피신고자2는 위와 같은 청탁을 받고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있는 신고사건을 담당하면서 소환조사 등 수사절차를 진행하고도 임의로 사건을 종결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이후 사건무마의 대가로 모범선형 경찰관 장려장을 수여받아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경찰 내부시스템에서 청탁 대상 사건을 확인할 수 없고, 사건기록도 존재하지 않으며, 장려상 수여 관련 공적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어 수사 및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조사 중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313조제2항(사후수뢰), 제33조제1항(뇌물공여), 공무원행동강령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 **착안사항** : 사건관리 전자시스템, 공적자료 등

공공기관의 용역비 산출 관련 예산낭비, 오펜수 방류 등 의혹

1분과위원회(2018. 11. 5.)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연구원과 ○○기업(주)가 2013. 12. 31. 계약금액 약 20,000만 원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신고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부풀려 용역비를 산출함으로써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900만 원을 취득하게 하여 ○○연구원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한 의혹이 있고, 2014. 6. 28. ○○연구원 폐수처리장의 저수조에 있던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의혹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이 사건 용역 계약 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 근로자의 월 지급액(기본급)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6.55%)를 곱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산출함으로써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900만 원을 취득하게 하여 ○○연구원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고, 2014. 6. 28. ○○연구원 폐수처리장의 저수조에 있던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혹이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광역시 각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 ○○부 및 ○○광역시 조사 중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착안사항 : 건강보험료 등

공공기관 창업·신용 대출자금 부정사용 등 의혹

1분과위원회(2018. 11. 19.)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공모하여, ○○기금과 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은행으로부터 약 8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지급받고, ○○공단으로부터 25,000만 원의 대출금을 지급받아 해당 대출금의 상당액을 대출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가상화폐 투자 등의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 횡령한 의혹



2. 의결이유

- 대출약정서,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종합해 보면, ○○공단 등으로부터 대출금을 법인계좌로 지급 받은 후 피신고자2의 개인계좌로 대출금 상당액을 이체하고 이를 사업 목적이나 대출 용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가상화폐 거래에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 ○○기금, ○○공단 각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대검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들이 대출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처분
※ 통보일자 : 2019. 1. 21.
 - ○○기금 조사결과, 보증부대출 중 일부가 신용보증약정서 제4조(자금용도 준수 의무) 제1항에 따라 '용도의 사용'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특별관리기업으로 분류하여 사후관리 실시 및 상환계약서 요청
※ 통보일자 : 2019. 1. 30.
 - ○○공단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확인·검토 중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제355조

지역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11. 19.)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협회 전 사무장으로서, 2017.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에서 축구공, 점퍼 등 다수의 스포츠용품 약 1,400만 원을 허위 구매한 후, 실제로는 ○○시 소재 ○○상사가 위 물품을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속이고 수천만 원의 ○○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로부터 축구공, 점퍼 등 7개 품목을 허위 구매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1,091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원받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도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56조, 지방재정법 제97조·제98조
- **착안사항** : 보조금 정산자료 등

○○공단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11. 19.)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공단으로부터 보조금 약 24억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면서, 2016년경부터 중요재산인 ○○저장시설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의 △△ 저장시설로 운영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공단 조사결과, 피신고자는 2016년경부터 ○○저장시설1을 당초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부합되는 용도로 운영하였으나, 나머지 ○○저장시설2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의 △△저장시설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부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보조금법 제35조
- 착안사항 : 사업비 교부 조건 및 내역 등

대학병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11. 19.)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10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다수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과제와 무관한 의무기록사, 임상시험 코디네이터 등에게 연구개발 인건비를 지급하고, 연구개발 인건비가 부족하자 타 연구과제에서 인건비를 용도 외 지급하였으며, 재료비를 특정업체를 통해 선결제 한 후 노트북, 컴퓨터 등의 개인적인 물품을 구입하고 회의비, 연구수당, 여비 등을 휴일 및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금액 미상의 연구개발비를 편취 및 유용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연구과제와 무관한 의무기록사, 임상시험 코디네이터 등에게 연구개발 인건비를 부정으로 지급하고, 타 연구과제의 참여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용도 외 지급하거나, 재료비를 특정업체를 통해 선결제 한 후 연구과제와 무관한 개인물품 등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2억 1,900만 원의 연구개발비를 유용하거나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대검찰청, ○○부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대검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제355조·제356조·제347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 착안사항 : 사업비 정산 내역, 관련자료 등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11. 19.)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6.4. ○○재단과 3건의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참여기관의 연구책임자로서 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로는 실험을 진행하지 않고 데이터를 조작한 허위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연구재료비를 과다 집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Track2) 사업의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채용한 연구원에게 기업이 부담해야 할 적금을 대신 납입토록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연구결과를 조작하여 허위의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수법으로 전문기관의 평가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연구 부정행위 및 재료비 과다 집행 등을 통해 정부보조금 5억 2,750만 원을 부정수급하고 연구인력 채용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여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부, ○○부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14조, 보조금법 제22조·제33조·제42조
- **착안사항** : 보조금 지급 정산내역서, 실태조사 결과 등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11. 19.)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4.6. ○○재단과 2건의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참여기관의 연구책임자로 과제를 수행하면서, (주)○○에 공동사업을 제안하여 최종 시제품을 납품받고도 이를 숨기고 정상적으로 과제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주)○○의 특허를 도용하여 연구과제를 수주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 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는 연구부정 행위를 통해 정부 출연금 1억 8,800만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허위의 결과보고서 작성·제출에 의한 업무방해 및 수행과제 관련 연구장비·재료비의 용도의 사용 의혹이 있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부, ○○부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14조, 보조금법 제22조·제42조
- **착안사항**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 실태조사 등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11. 19.)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3.6.경부터 2018.8.경까지 ○○진흥원 등 4개 연구전담기관 주관으로 9개 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와 무관한 직원들을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지급하고, 페이퍼 컴퍼니 형태로 설립한 5개 업체로부터 구입한 60여개 재료 등을 연구개발에 사용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연구개발비 정산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익 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4개 연구기관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와 무관한 직원들을 연구원으로 허위등록하고 인건비 총 3억 943만 원을 지급하고, 자신이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5개 업체로부터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연구재료비 약 7억 127만 원을 횡령하는 등 총 10억 1,070만 원 상당을 횡령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부,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부, ○○부, ○○부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56조, 보조금법 제40조
- 착안사항 : 연구비 지급 정산내역서, 관련자료 등

대학교수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11. 19.)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대학교 교수로, 2016.2.부터 2018.8.까지 8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공동 사용하기 위하여, 학내 은행에서 동일한 비밀번호를 설정하게 한 후 참여 연구원들 명의의 통장을 사무원에게 맡겨 일괄 보관하게 하고 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약 2억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 관련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는 2016.1.부터 2018.8.까지 8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연구원들이 교부받아야 할 인건비 등을 사무원을 통해 공동 관리하는 방법으로 약 2억 원을 편취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부,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부, ○○부, ○○부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40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 착안사항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 관련자료 등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11. 19.)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16년부터 2018.8.경까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회사 직원 다수를 연구원으로 허위등록하거나 회사에 필요한 설비를 구입하고는 연구개발에 사용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받는 방법으로 수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2016.12.경부터 2018.8경까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와 관련이 없는 직원 다수를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편취하였고, 회사에 필요한 설비를 구입하면서 연구개발에 사용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총 9억 1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것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부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33조
- 착안사항 : 신고자의 진술,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노인복지센터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12. 3.)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복지센터 대표로서, 2012.경부터 2018.11.경까지 ○○부 등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면서, 응급관리요원 등의 인력을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수천만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부, ○○도, ○○군 등으로부터 국비, 도비, 군비 등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면서, 기술요원 및 응급관리요원 등을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관계기관을 속여 인건비 수천만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부, ○○도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33조·제40조, 지방재정법 제97조
- 착안사항 : 신고자의 진술, 관련자료 등

장애인협회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12. 3.)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중증 장애인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개인 운전기사 및 활동보조인을 ○○협회 직원으로 등록시켜 ○○도로부터 중증장애인 이동지원 사업비로 연간 7,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자신의 개인비서 월급으로 사용하고 ○○도에서는 협회 22개 시·군 지회의 사업량을 정산결과로 사용함으로써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7년 중증장애인 이동지원 및 업무지원 사업을 위한 지방보조금 7,000만 원을 교부 받아 사업의 목적 및 계획과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고, ○○협회에서 자체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교통사고 예방 상담지원센터 운영비로 전가하여 사용함으로써 그 사업비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도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제356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제32조의8·제97조
- 착안사항 : 보조금 지급·정산내역서, 실태조사 결과 등

대학교수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12. 3.)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대학교 교수로, 2013.5.부터 2018.4.까지 ○○연구재단과 협약을 통해 3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타인에 의해 미리 작성된 논문 8편을 본 건 과제의 연구실적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천만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각 과제별 연구결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가 ○○연구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3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타인에 의해 미리 작성되거나 피신고자 본인이 연구수행 전 이미 작성한 논문을 연구수행 중 작성하여 학술지에 투고한 것처럼 연구결과보고서 상의 연구성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천만 원을 편취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부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40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 착안사항 : 각 과제별 연구결과보고서 등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12. 3.)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 소재 (주)○○ 대표로, 2017.1.부터 2019.4.까지 정부지원금 총 8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을 수행하면서, 기술개발과 관련 없는 피신고자 모친이 경영중인 업체로 불법 이체하는 방법으로 연구비 1억 1,880만 원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7.1.부터 2019.4.까지 ○○부 지원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거래업체에 중도금으로 지급할 1억 1,880만 원을 연구개발과 관련 없는 업체에 임의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부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40조
- **착안사항** : 사업계획서, 연구비 사용내역 등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12. 3.)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1,2는 (주)○○의 지사장들로, ○○부의 지원을 받아 사업장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원격교육을 실시하면서, 기존 원격교육 시행과정에서 취득한 사업장 및 근로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온라인 교육을 대리수행하고 관련 지원금을 수령하는 등 교육훈련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1,2는 근로자직업훈련기관의 지사를 운영하면서 350개 업체의 교육훈련생 정보를 이용하여 대리수강하는 방법 등으로 2018.1.부터 2018.7.까지 총 1,531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부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제62조의3
- **착안사항** : 신고자의 진술,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현장기술인력 재교육사업 지원금 등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12. 3.)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이 공모하여 2015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이를 되돌려 받거나, 직원과 강사들에게 출장비와 강사비를 집행 후 되돌려 받는 방법 등으로 수억 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직원들을 출장자로 허위 등록하여 출장비를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고, 강의장 임차료와 홍보비 등을 거래업체를 통해 부풀리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총 3억 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부,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부, ○○부, ○○시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부, ○○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56조, 보조금법 제33조·제41조, 지방재정법 제97조
- 착안사항 : 신고자의 진술,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12. 3.)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어린이집 대표 겸 원장으로, 2016.3.부터 현재까지 자신이 담임교사로 등록된 ○○반 등의 보육 및 서류작업 등 담임업무 일체를 보조교사에게 수행토록 한 후 처우개선비 등 인건비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6.3.부터 2018.5.까지 자신이 담임으로 등록된 ○○반 및 △△반에 대하여 보조교사로 하여금 담임교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에도 자신이 담임교사로 보육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 등 총 3,533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도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9조·제40조·제54조, 지방재정법 제97조, 형법 제347조 등
- 착안사항 : 신고자의 진술,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등

관급공사 공공예산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8. 12. 17.)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1은 ○○건설(주)의 대표이사이고, 피신고자2는 ○○시 공무원으로 피신고자1은 ○○청 '○○세관 검사장 신축공사'와 ○○시 '○○산 ○○숲 조성공사', ○○시 '○○동 정비공사'를 시공하면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등으로 안전관리비를 편취하였고, ○○시 '○○쉼터 조성공사'에서는 피신고자2와 유착하여 부당하게 사업을 수주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1은 공사를 시공하면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등으로 안전관리비를 편취하였고, ○○시 '○○쉼터 조성공사'에서는 피신고자2와 유착하여 부당하게 사업을 수주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과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조사결과, 환수 636만 원, 주의 2명
 - ※ 통보일자 : 2019. 2. 28.
 - 경찰청, ○○청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경찰청, ○○청 조사결과 확인·검토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 **착안사항** : 신고자 제출 증거자료, 피신고기관 사업내역서 등

연구용역비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8. 12. 17.)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연구용역을 수행할 실질적인 인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소속 근로자를 마치 ○○연구원의 근로자인 것처럼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연구용역을 수주하는 등의 수법으로 연구용역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각 공단 4대 보험 관련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피신고자는 ○○연구원의 근로자가 아닌 ○○법인 소속 근로자를 마치 해당 연구원의 근로자인 것처럼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이 사건 연구용역을 수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수사와 감사 등이 필요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 ○○부 각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대검찰청 수사결과, ○○연구원이 이○○ 등을 채용하면서 작성한 고용계약서, 급여 지급 및 4대 보험 가입 관련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불기소처분
 - ※ 통보일자 : 2019. 3. 11.
 - ○○부 조사결과,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
 - ※ 통보일자 : 2019. 2. 8.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확인·검토 중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12. 17.)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재)○○지원센터 등으로부터 미술품 전시 사업비 등을 보조받아 미술품 전시행사 등을 하면서 행사용 작품운송비, 인쇄비, 작품임차비, 홈페이지 구축 비용 등을 업체로부터 돌려받거나, 직원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가 돌려받는 방법으로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5.10.경부터 2018.8.경까지 미술품 대여 및 전시사업 등 3개 보조사업을 수행 하면서 작품운송비, 작품임대료, 행사용 인쇄비, 직원 인건비 등을 지급하였다가 되돌려 받는 방법 등으로 보조금 약 3,790만 원을 횡령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부, ○○시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56조, 보조금 제40조
- 착안사항 : 보조금 지급내역서, 사업비 정산내역서 등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12. 17.)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주)○○ 대표이사로, 2017.6.부터 2018.6.까지 ○○부와의 협약을 통해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여러 거래업체들과 공모하여 구입하지 않은 물품에 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연구장비 재료비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수천만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 전담기관 정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는 거래업체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연구장비 재료비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2,298만 원을 편취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부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40조
- 착안사항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 전담기관 정산자료 등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12. 17.)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5.12.부터 2016.11.까지 ○○부로부터 2억 1천만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관련업체로부터 임차한 기밀시험장치 및 기존 보유중인 시험장치 등을 신규 구매한 것으로 속여 금액 미상의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최종보고서 기밀성시험 내용을 확인한 결과, 기밀테스트 시험장치가 시험에 실제로 사용되었다는 어떠한 내용도 확인되지 않아 해당장치 구입금액 7,078만 원을 편취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여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부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40조
- **착안사항** : 연구비 사용내역, 사업관련 자료 등

전통시장활성화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12. 17.)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7년 ○○종합시장 상가 지하2층 천장(슬래브)에 대하여 노후보강공사를 추진하면서 일부 공사만 시행하였음에도 전체 공사비가 소요된 것처럼 속이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특화전문시장 지원 사업비를 교부받으면서 실제로는 상인들로부터 협찬 받은 돈이 일부 있었음에도 전부 보조금이 소요된 것처럼 속였으며, 2014.4.부터 2015.3.까지 시장매니저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월 보조금 약 50만 원을 지원받았음에도 실제로 채용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금액 미상의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편취 의혹에 대하여 설계(변경)내역서·도면상의 슬래브 면적 및 두께가 현장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설치변경액 2,134만 원의 편취 가능성이 있으며, 2012년 상인들의 협찬 사실이 확인되어 사업비 차액 127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총 2,837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했을 가능성이 상당하여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부, ○○시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40조, 지방재정법 제97조
- 착안사항 : 설계 관련 도서, 보조금 지급·정산내역서 등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12. 17.)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어린이집 대표 겸 원장으로, 교사 등 16여 명의 종사자들에게 성과상여금, 처우 개선비, 명절수당 등을 지급한 후 이를 현금 및 사무원 명의 은행계좌를 통해 되돌려 받고, 잡화 등을 취급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원장으로서 겸임 제한을 위반하였음에도 어린이집에 상근하여 정상근무를 한 것처럼 속여 관리수당 등을 부정하게 교부받는 방법 등으로 금액 미상의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관계기관의 현지 조사결과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교사 등 16여 명의 종사자들에게 평가인증성과급, 처우개선비 등의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한 후 현금 또는 사무원 명의 은행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여 되돌려 받고,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원장의 겸임 제한을 위반함으로써 원장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등을 편취하는 등 총 1억 915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도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교

- **적용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54조, 보조금법 제40조, 형법 제347조, 지방재정법 제97조
- **착안사항** : 신고자의 진술, 관계기관 현지 조사결과 등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12. 17.)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8.2.부터 2018.10.까지 파트타임 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지급된 인건비를 다시 돌려받거나 시간연장 보육을 이용하지 않은 원생을 대상으로 출석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금액 미상의 보조금 등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보조금 지원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는 2018.2.부터 2018.10.까지 파트타임 교사 등 9명을 시간의 연장교사나 담임교사, 기타종사자로 허위 등재하는 방법으로 기본보육료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시간연장 보육을 이용하지 않은 9명의 원생을 시간연장 보육을 한 것처럼 속여 보육료를 편취하는 등 총 8,1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시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보조금법 제33조·제40조, 형법 제34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지방재정법 제97조 등
- 착안사항 : 보조금 지원내역, 기본보육료 지원내역 등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등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12. 17.)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4.6.경부터 직원들에게 실제 월 2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음에도 13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속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수백만 원을 부정수급하였고, 이미 회사에 근무 중인 직원 등 3명을 구직등록을 통하여 새로이 채용한 것처럼 속여 ○○부로부터 금액 미상의 고용촉진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4.5.부터 2018.3.까지 직원 등 4명의 월 평균보수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총 353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미 회사에 근무 중인 직원 등 3명에 대하여 구직등록을 통해 채용한 것처럼 속여 ○○부로부터 고용촉진지원금 약 1,350만 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은 의혹이 있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부, ○○부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고용보험법 제35조·제116조·제118조,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제131조
- **착안사항** : 고용촉진지원금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내역 등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12. 17.)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시에 소재한 ㈜○○ 등의 대표 및 화물자동차 차주들로, 수년전부터 영업용 화물자동차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혼용하여 운영하면서 자가용 화물자동차 주유 건에 대하여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등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이 영업용 화물자동차 주유비를 부풀려 결제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주유하거나 자가용 화물자동차 주유비를 외상으로 결제한 후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등으로 약 3,236만 원 상당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시,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도, ○○시, ○○시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도, ○○시, ○○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44조, 형법 제347조
- **착안사항** : 보조금 지급 내역, 화물자동차 운행거리 조회자료 등

축사신축보조금 부정수급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12. 17.)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6년 축사운영 경험이 없어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담당공무원 등과 공모하여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속여 ○○군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축사를 신축하였으나 사후관리 기간에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로 제공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한 축사를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도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보조금법 제35조·제40조·제41조
- 착안사항 : 사업계획서, 보조금 지급 정산내역서, 사업관련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등

사립유치원 원장의 보조금 등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12. 17.)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유치원 前 원장으로, 2011.6.경부터 2017.9.경까지 재직하면서 유치원에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를 행정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금액 미상의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며, 2015.4.경부터 2017.3.경까지 배우자를 사학연금에 가입시켰다가 퇴사처리하고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명목으로 사학연금 51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실제 유치원에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를 행정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매월 약 175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8,4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었고, 2015.4.경부터 2017.3.경까지 배우자를 사학연금에 가입시켰다가 퇴사처리하고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명목으로 사학연금 51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부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9조
- **착안사항** : 연금 지급 내역 등

한부모가족 지원금 등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12. 17.)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한부모가족 지원금 수급자로, 2013. 10.경부터 2018. 10.경까지 (주)○○ 및 (주)○○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면서 월 평균 380만 원의 소득이 있음에도, 급여 일부를 같은 직원 명의로 수령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숨기고 ○○시 및 ○○교육청으로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한부모가족 지원금 수천만 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6. 1.경부터 2018. 10.경까지 식당 (주)○○ 등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 380만 원을 지급받아 동료 직원에게 일부 금액을 대신 수령케 하거나, 형제로부터 약 3,929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지원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시 및 ○○교육청으로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한부모가족 지원금 등 총 1,423만 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교육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도, ○○교육청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도, ○○교육청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교

- **적용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9조, 형법 제347조
- **착안사항** : 신고자의 진술, 관련자료 등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12. 17.)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소재 ○○지역아동센터 대표로서, 2015.1.경부터 2018.3.경까지 ○○시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저소득 다자녀 가정의 자녀들에게 급식제공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같은 건물 내 위치한 매장에서 쌀, 부식류 등 식자재를 구매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급식 관련 식자재를 구입하고 반품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당 금액을 현금포인트로 적립하여 피신고자 개인과 지인의 명절 과일 선물세트 구입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부, ○○시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56조, 보조금법 제32조·제40조, 지방재정법 제97조, 아동복지법 제61조 등
- 착안사항 : 보조금 지원현황, 카드사용내역 등

일학습병행제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12. 17.)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 소재 ○○대표로서, 2015.1.경부터 2018.9.경까지 ○○부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사업 실시기관으로 선정되어 훈련을 실시하면서, 실제 현장훈련(OJT)을 실시하지 않고 학습활동서, 출석부 등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억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부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사업 실시기관으로 선정되어 훈련을 실시하면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회사프로젝트에 참여시키고 수당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부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33조·제40조
- 착안사항 : 보조금 지원현황, 훈련비 및 수당 지급내역 등

제1장 부패행위 신고사건

이첩사건 처리결과 추록



○○협회 정부 지원금 횡령 의혹

1분과위원회(2014. 8. 11.)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11~2013경 ○○공사 및 ○○시와 ‘○○ 체험행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 중, 체험행사 참여자의 인건비를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 정산한 후 약 39,730천 원을 횡령한 의혹과 2010~2011경 자신이 운영하는 ○○원에서 사실은 위 체험행사 참여자를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진료를 한 것처럼 ○○공단에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여 197천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의혹



2. 의결이유

- 보조금 전반에 걸쳐 행사참여자 전원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의 필요성과 직원들에 대한 감사 및 보조금 환수, 진료비에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감사 및 환수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조사결과, 허위청구금액 환수 및 자격정지 1월
※ 통보일자 : 2018. 4. 2.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부,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57조
- 착안사항 : 진료비 허위청구내역 등

○○ 공사 인건비 등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15. 8. 24.)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09. 12.~2015. 12.까지 ○○공사와 통행료 수납 용역을 계약하면서 ○○ 영업소 통행료 일체를 ○○공사에서 지정한 은행에 입금하고, 매달 ○○공사에 기성금을 청구하여 용역비 894,885만 원을 편취한 의혹임
- 또한, 2014. 1. 28.경 ○○ 영업소 직원에게 인건비를 송금하고, 다시 현금으로 찾아오게 하는 수법으로 기성금 청구서를 허위 제출하여 편취한 의혹임



2. 의결이유

- ○○공사와 피신고자 간의 통행료 징수 용역 도급 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용역비 60,877만 원 편취사실 인정되어 사기죄로 기소 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17. 3. 27.
 - ○○부 조사결과, 운영업체 '경고' 및 ○○부에 '고발' 조치
※ 통보일자 : 2019. 1. 15.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57조 제1항(사기) 등
- **착안사항** :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1. 9.)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 소재 장기요양기관 ○○요양원의 대표로, 2014.1.부터 2016.8.까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 등 친인척을 요양보호사로 허위 등록하거나, 시간제 근무자인 △△△ 등을 종일 근무자로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 ○○시 및 ○○공단과의 공동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는 2014.1.부터 2016.8.까지 요양보호사를 허위로 등록하고, 시간제근무자 등을 종일 근무자로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4억 3,993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시, ○○공단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에 대한 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7. 4. 11.
 - ○○시 조사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확인되어 업무정지 6개월, 과태료 50만원 처분
※ 통보일자 : 2018. 2. 1.
 - ○○공단 조사결과, 부정수금액 4억 3,994만 원 환수
※ 통보일자 : 2018. 1. 18.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시, ○○공단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43조
- **착안사항**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 공동조사 결과 등

○○ 위탁운송 업체의 운송비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7. 1. 9.)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1은 '14. 11. ~ '16. 5.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00을 운송하면서 차량 용적이 2.5톤임에도 5톤 차량으로 허위기재하여 운송비를 편취하고, 피신고자 2는 피신고자 1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를 알면서도, 피신고자 1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번호를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로 운송확인서에 기재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는 방법으로 위반사실을 은폐하고, 피신고자 3은 피신고자 2의 위법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 또는 결탁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부패행위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 1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피신고자 2의 차량번호 허위 등록 행위, 피신고자 3이 이를 묵인 또는 결탁한 의혹이 있음을 00지원단의 자체감사 등에서 확인되어 수사 및 행정 조치 등이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 1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신고자 2의 공전자기록등 위작 혐의 인정되어 광주지검 순천지청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17. 4. 13.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 1 운영 (주)00화물에 대한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피신고자 2,3에 대한 징계 요구, 신고 외 00팀 직원 3명 징계요구, 00팀 2명 경고, 징계서호 도과자 1명 인사자료 활용
※ 통보일자 : 2017. 4. 13.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형법 제227조의 2
- 착안사항 : 운송확인서 등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5. 29.)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테크 대표로, 2016.6.경 약 7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융합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과제와는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거래업체와 공모하여 실물거래 없이 돈을 송금한 후, 기존 채무 변제에 충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6.6.부터 2018.6.까지 ○○시스템 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거래업체로부터 연구과제와는 무관한 장비를 구입한 후, 마치 연구과제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한 것처럼 속여 연구개발비 900만 원을 편취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에 대한 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 통보일자 : 2017. 9. 13.
 - ○○부 조사결과, 정산금을 제외한 정부출연금 전액 2,097만 원 환수 및 주관기관, 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에게 참여제한 5년 조치
 - ※ 통보일자 : 2019. 1. 10.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40조
- **착안사항**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 전담기관 합동 현장점검 결과 등

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6. 26.)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5.6.부터 2015.12.까지 ○○시 ○○구와 약정을 맺고 '2015년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거래업체인 ○○로부터 재료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그 거래대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939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관련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는 2015.6.부터 2015.12.까지 '2015년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거래업체인 ○○로부터 재료를 구매한 것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거래대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939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 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 통보일자 : 2017. 11. 29.
 - ○○시 조사결과, 부정수금액 939만 원 환수 결정
 - ※ 통보일자 : 2018. 1. 29.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 보조금법 제40조
- **착안사항** : 신고자의 진술, 관련자료 등

사회서비스 바우처 비용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6. 26.)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서로 공모하여 심리상담 차 방문한 환자 등에게 허위 소견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게 하고, 2016.부터 2017.5.까지 사회서비스 이용자들의 바우처 카드 118장을 보관하면서 실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30여 장의 바우처 카드를 허위 결제하는 방법으로 바우처 비용 4,712만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 관련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서비스이용자가 소지해야 할 바우처 카드 118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바우처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확인되는 등 정부 지원금 총 4,712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들에 대한 혐의 확인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7. 11. 1.
 - ○○시 조사결과, ○○클리닉 경고 및 102만 원 환수, ○○상담클리닉 영업정지 6개월 및 8,228만 원 환수
※ 통보일자 : 2017. 12. 19.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8조,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33조 의2·제40조
- **착안사항**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 관련자료 등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9. 11.)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정부지원금을 받아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당초 계획한 연구개발이 실패하자 자신의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빌려 연구결과를 조작함으로써 기술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고하여 금액 미상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 최종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는 2016.11.부터 2017.1.까지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당초 계획한 연구개발이 실패하자 타사의 상용제품을 마치 자신의 회사에서 개발한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연구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7. 11. 29.
 - ○○부 조사결과, 부정수금액 1,917만 원 환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3년 조치
※ 통보일자 : 2019. 1. 20.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137조, 중소기업혁신촉진법 제31조
- **착안사항** : 최종보고서, 사업수행 관련자료 등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9. 11.)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1은 피신고자2와 공모하여, 2015.11.부터 2017.4.까지 피신고자2가 운영하는 ○○주유소 등지에서 피신고자1 회사 소유의 화물자동차 4대에 4개의 주유카드를 돌려가며 주유탱크 용량을 초과하여 주유하거나 동일 차량에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하는 방법으로 금액 미상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1이 소유한 화물자동차 4대의 주유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실제 주유량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일괄결제하고 있는 점, 동일 주유소에서 짧은 시간 내에 동일한 화물자동차에 2차례에 걸쳐 주유한 기록, 차량들의 주유탱크 용량을 초과하여 주유한 것으로 결제한 기록 등이 다수 확인 되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신고자들이 서로 공모하여 화물자동차에 주유 시 주유량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약 797만 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들이 공모하여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 통보일자 : 2018. 5. 8.
 - ○○시 조사결과, 피신고자1의 편취액 1,051만 원 환수 및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처분, 피신고자2의 공모·가담 행위에 대한 과징금 1,500만 원 부과 조치
 - ※ 통보일자 : 2018. 10. 26.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 **착안사항** : 유가보조금 지급현황 자료 등

○○ 공공주택지구 보상금 편취 비리 의혹

1분과위원회(2017. 9. 25.)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지구'에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음에도 영농에 종사한 자들과 공모하여 영농 보상 토지를 불법 분할 받은 후 ○○공사에 영농보상을 신청하여 약 65,000만 원의 영농보상금을 편취한 의혹

**2. 의결이유**

- 영농보상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와, 환수 등 조치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영농보상금 43,771만 원 편취 등의 혐의로 2명 구속 기소, 62명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
 - ※ 통보일자 : 2018. 11. 1.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교**

- **적용법령** : 사기 등
- **착안사항** : ○○증명서 등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9. 25.)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4.9.경 ○○시에 거주하는 ○○○와 결혼식을 하였으나, 혼인신고 없이 ○○○의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하였고,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월 80만원 상당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하게 교부 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 피신고자의 의료급여 수급내역 등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는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생계급여 1,717만 원, 주거급여 496만 원, 의료급여 235만 원 등 총 2,5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8. 3. 4.
 - ○○시 조사결과, 부정수금액 2,767만 원 환수 조치
※ 통보일자 : 2019. 1. 29.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 **착안사항** : 피신고자의 의료급여 수급내역 등 관련자료

한부모가족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11. 13.)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07년경 ○○에 입사하여 매니저로 일하며 월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신고자 명의 계좌로는 월 120만 원만 수령하고 나머지는 친인척의 계좌로 나누어 받는 방법으로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는 월평균 소득 및 보유 재산이 지원기준을 초과함에도 이를 숨기고 소득을 축소 신고하여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한부모가족 지원금 493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조사결과, 부정수금액 493만 원 환수 결정
 - ※ 통보일자 : 2018. 2. 20.
- **위원회 검토의견**
 - ○○도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25조의2·제29조, 형법 제347조
- **착안사항** : 신고자의 진술,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11. 13.)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어린이집 대표로, 2015.12.경부터 2016.2.경까지 약 3개월 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을 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보조금 지원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는 2015.12.경부터 2016.2.경까지 평소 친분이 있는 ○○○을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기본보육료 240만 원, 근무 환경개선비 및 복지수당 100만 원을 지급받고,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에게 급여 339만 원을 지급한 후 피신고자의 개인 통장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총 679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시 ○○구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8. 3. 29.
 - ○○시 ○○구 조사결과, 보조금 340만 원 반환 및 운영비 계좌로 339만 원 여입 조치, 원장 등 자격정지 및 교사 자격취소, 과징금 630만 원 부과
※ 통보일자 : 2018. 7. 2.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시 ○○구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교

- **적용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54조, 보조금법 제40조, 형법 제347조, 지방재정법 제97조
- **착안사항** : 신고자의 진술, 보조금 지원내역 등

일학습병행제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5. 14.)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주)○○의 대표와 팀장으로, 실제로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들에게 학습 등을 시행하지 않고 교육계획서, 학습일지 등 관련 서류 작성을 대행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공모하여 일학습병행제 보조금 2,468만 원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 일학습병행 훈련비 및 전담인력 수당 지급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들은 ○○아카데미의 교육강사인 ○○○와 행정직원인 △△△를 (주)○○의 일학습병행제의 학습근로자로 등록한 점, (주)○○의 현장에 출입한 적이 없는 피신고자2를 기업현장교사로 등록하여 보조금 약 2,468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들에 대한 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 통보일자 : 2019. 2. 28.
 - ○○부 조사결과, 부정수금액 1,535만 원 환수 및 1,584만 원 추가징수, 지원·용자제한 300일 등 행정조치
 - ※ 통보일자 : 2018. 12. 3.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교

- **적용법령** : 고용보험법 제35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62조의3
- **착안사항** : 일학습병행 훈련비 및 전담인력 수당 지급내역 등

제2장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1.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2.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
3.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제2장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부당한 업무지시 등 신고 관련 신분공개여부 확인 요구

전원위원회(2018. 10. 8.)

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요구인은 ○○공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손해배상 처리과정에서 본부장이 내부규정에 따른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비를 부풀려 처리하게 하는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내용을 신고함.
- 신고처리 담당 공무원은 요구인의 신고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에 자료요청을 하면서 ○○공사 감사실에 요구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진정서를 공문에 그대로 첨부하였고, 이에 요구인은 신고처리 담당 공무원이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며 신분공개여부 확인을 요구함.



2. 심의내용

- 요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및 신고처리 담당 공무원이 ○○공사 감사실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문서 등을 볼 때 신고처리 담당 공무원이 요구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진정서를 ○○공사 감사실에 그대로 송부하여 신분이 공개된 것으로 확인됨.
- 이와 관련하여 신고처리 담당 공무원이 요구인의 인적사항을 지우더라도 신고자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인적사항을 지우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 제1항은 신고자가 누구인지를 피신고자가 모르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님.
- 또한, 신고처리 담당 공무원이 신고자 보호를 위해 요구인의 인적사항을 삭제하고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사항들만 별도로 정리하여 보낼 수 있었고, 특히 피신고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에 자료를 요청한 사안임에도 요구인의 인적사항을 그대로 노출하여 송부한 점을 볼 때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임.



3. 결정결과

- 위원회는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피요구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함.



4. 비고

- **적용법령** :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 제1항 및 구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 **착안사항** : 부패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 위반 여부

「산업재해 은폐 강요 의혹 등」 신고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

제2분과위원회(2018. 12. 17.)



1. 의안개요

- 요구인은 ○○공사의 행동강령 위반 및 산업재해 은폐 강요 의혹 등을 위원회에 신고함.
- 요구인은 당초 근무지에서 다른 사업소로 전보조치 되었고, 전보된 곳에서도 다른 직원들에게 신고 사실이 알려져 근무가 어려워 다른 곳으로 전보 등을 해줄 것을 요구함.



2. 심의내용

- 요구인의 산업재해 은폐 강요 의혹 등 신고는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제11조 및 제13조 위반에 해당함.
- 요구인은 이 사건 신고와 관련하여 다른 사업소로 전보 조치된 점, 요구인이 신고자라는 사실이 알려져 근무 고충과 애로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자를 적극 보호하여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를 통해 부패를 예방하려는 법 취지 등에 비추어, 요구인의 전보 등 인사조치 요구는 타당해 보임.
- 피요구인은 인사 관련 규정을 근거로 들면서 전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나, 내부 규정보다 상위 법규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 제8항에 따라 피요구인에게 필요한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공사의 전보제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공사 내부의 신고자 보호 관련 지침에도 공익신고 등을 한 소속직원이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요구인이 이에 해당함.



3. 결정결과

-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8항에 따라 요구인에 대하여 전보 등의 인사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로 의결함.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제67조
- **착안사항** : 요구인의 전보 등 인사조치 요구내용이 타당한지 여부

제2장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1. 8.)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80억 4,185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병원 대표 등이 사무장병원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허위로 치료를 한 것처럼 신청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하는 등의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이 부정수급한 요양급여비용 80억 4,185여만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다만, 환수결정된 80억 4,185여만 원 중 500만 원만 환수된 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의 50%를 지급함.



3. 결정결과

- 금 203,069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등

「사회서비스 바우처 비용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1. 8.)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사회서비스 바우처 비용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1억 7,356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의 원장이 무자격 인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자 확인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 허위로 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 1억 7,356여만 원에 대한 환수 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44,712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2. 26.)

보상심의회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5억 7,607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들이 사무장의원을 개설·운영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이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5억 7,607여만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다만, 환수결정된 5억 7,607여만 원 중 4,799여만 원만 환수된 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의 취지에 따라 환수 완료 금액을 지급함.



3. 결정결과

- 금 47,990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등

「실버요양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2. 26.)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실버요양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2억 4,797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요양원에서 내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를 이중등록하여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하고, 해당 요양원 직원들에게 인건비가 과오지급되었음에도 이를 환수하지 않는 등의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기관이 부정수급한 복지수당 및 요양급여비용 2억 4,797여만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34,018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2. 26.)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1억 4,126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도 ○○군 소재 요양원 원장인 피신고자가 파트타임 근무자, 식당 종사자 등을 요양보호사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부정수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1억 4,126여만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38,252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3. 26.)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18억 8,317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 및 통신기기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이사 등인 피신고자들이 다수의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타부서 직원을 연구원으로 허위로 등록하거나 허위 매출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이 부정수급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18억 8,317여만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303,644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교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3. 26.)

보상심의회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등」 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4억 2,40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요양원 원장이 조리업무 종사자, 세탁업무 종사자, 시설관리 및 차량관리업무 종사자 등을 요양보호사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장기요양급여 4억2,400여만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65,361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사업 등 보조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3. 26.)

보상심의회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사업 등 보조금 편취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3억 2,153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전통주 업체의 대표가 협력업체에 허위 또는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고, 허위로 서류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등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부정수급한 보조금 3억 2,153여만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35,710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게임업체의 보조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3. 26.)

보상심의회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게임업체의 보조금 편취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2억 32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들이 게임개발 능력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내세워 게임개발 지원업체로 지원하고 페이퍼 컴퍼니의 대표 및 개발자를 피신고업체 임직원들로 허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이 용도 외로 사용한 보조금 2억 320여만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50,640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장애인활동 보조 서비스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3. 26.)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장애인활동 보조 서비스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1억 2,314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과 활동보조인인 피신고자들이 서로 공모하여 야간 활동보조를 하지 않는데도 바우처카드로 결제하거나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독거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지원금 1억 2,314여만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34,628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공장설치 지원금 등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5. 28.)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공장설치 지원금 등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3억 8,867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투자촉진 신·증설기업지원 사업 관련 지원금을 받아 증축한 공장을 외주 업체에 임대하는 등 지원금을 용도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연구원을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제품공정기술개발사업 관련 지원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허위 또는 부당 수급한 지원금 3억 8,867여만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다만, 신고자가 부패행위에 단순가담한 부분에 대해 10% 감액함.



3. 결정결과

- 금 60,273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 **착안사항** :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감액사유 존재 여부 및 감액률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관련 보조금 편취 등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5. 28.)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관련 보조금 편취 등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5억 123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지열난방공사 참여 시공업체 대표들이 무자격 시공업체 대표들에게 지열난방공사 시공권을 불법 양도하고 허위로 작성한 공사 계약서 등을 ○○공단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당 편취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보조금 5억 123만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48,286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편취 등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5. 28.)

보상심의회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편취 등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3억 4,236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정부보조금을 지원받는 장애인시설 대표가 가족 및 친척을 시설종사자로 등재시켜 인건비 보조금을 편취하고, 시설운영비를 사적용도로 사용하며, 시설 입소자들의 통장을 관리하며 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보조금 3억 4,236만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53,931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5. 28.)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2억 5,800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체 운영자 등이 장애인 고용시 지원되는 자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제품 가격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편취한 의혹과 허위의 거래증빙을 발행해 주는 등의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이 부정수급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 2억 5,800만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61,600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철도 터널 공사비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7. 16.)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철도 터널 공사비 편취 의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80억 3,739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비용절감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건설업체가 ○○공단에서 발주한 철도건설공사를 하면서 설계된 공법보다 저렴한 공법을 사용하여 발파 굴착을 하거나 설계도면에 기재된 발파공수보다 적게 시공하는 수법으로 공사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80억 3,739여만 원의 공사비가 설계변경 감액되거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설계변경 감액 등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다만, 신고자가 부패행위에 단순 가담한 부분에 대해 10%, 신고의 정확성 등을 고려하여 30% 감액함.



3. 결정결과

- 금 337,538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 **착안사항** :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감액사유 존재 여부 및 감액률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7. 16.)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135억 5,036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들이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부정수급한 요양급여 135억 5,036만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하나, 실제 환수액이 결정된 보상금 5억 8,837만원의 50%를 미치지 못하여 결정액의 50%인 2억 9,168만 원 지급함.



3. 결정결과

- 금 291,680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버스재정지원금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7. 16.)

보상심의회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버스재정지원금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2억 9,809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마을버스 사장들이 친족 등을 기사로 허위 등재하여 수년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이 부정수급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2억 9,809여만 원에 대한 환수 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47,732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철도 터널 공사비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전원위원회(2018. 10. 8.)

보상심의회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철도 터널 공사비 편취 의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이의 신청을 함.
- 위 신고로 인하여 80억 3,739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고, 이의신청의 일부 내용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추가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건설업체가 ○○공단에서 발주한 철도건설공사를 하면서 설계된 공법보다 저렴한 공법을 사용하여 발파 굴착을 하거나 설계도면에 기재된 발파공수보다 적게 시공하는 수법으로 공사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을 지급받음.
- 신고자는 자신은 감리단장 등의 지시를 받는 입장으로 부정한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없었던 사정 등이 있었으므로 보상금을 감액 없이 지급해 달라고 요청함.
- 신고자가 해당 공사의 기성금을 청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통상적인 기성검사를 통해서도 바로 잡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고 이후 지급된 기성금에 대해서는 감액이 필요하므로, 신고 이전 지급된 기성금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추가지급함.



3. 결정결과

- 금 32,746천 원의 보상금 추가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 **착안사항** : 감액사유 존재 여부 및 감액율

「거꾸집 미설치로 인한 경계석 부설시공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10. 8.)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거꾸집 미설치로 인한 경계석 부설시공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1억 4,511만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신도시 및 ○○도시의 도로, 하천 등의 기초시설물인 경계석 시공시 거꾸집 2면을 설치 후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꾸집을 설치하지 않거나 거꾸집 1면만 설치하는 등 편법으로 시공함으로써 공사비를 부당 편취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공사비 1억 4,511만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38,919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공공기관 건설현장 불량건축자재 납품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10. 8.)

보상심의회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공공기관 건설현장 불량건축자재 납품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2억 2,405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납품업체 대표가 KS규격에 미달되는 D13철선으로 바닥구조체를 제조하여 ○○청과 ○○공사에 납품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부당이득금 2억 2,405만 4,075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37,367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요양급여 비용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10. 8.)

보상심의회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요양급여 비용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1억 9,574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요양기관 대표가 이중 근무표를 만들어 근로계약보다 적게 근무한 간호사에게 급여 차액을 돌려받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부정수급 1억 9,574여만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33,404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제약회사 공공기관 로비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11. 19.)

보상심의회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제약회사 공공기관 로비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2억 2,669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제약회사 대표가 자사 판매 의약품에 대한 심사·평가 등에 대비하여 관련기관 관계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고, 전국 일반 병·의료원에도 약품 구매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 등의(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의 부패행위가 적발되었고, 추징금 2억 2,669만원의 수입회복이 있었으며, 위 부패신고와 수입회복 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37,736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공공기관 발주 아파트 공사비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11. 19.)

보상심의회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공공기관 발주 아파트 공사비 편취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2억 5,790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들이 ○○공사에서 발주하는 주택건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편취하고, ○○공사 감독에게 향응 및 금품을 제공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공사비 2억 5,790만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52,676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공공기관의 토목용 보강재 구매예산 낭비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11. 19.)

보상심의회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공공기관의 토목용 보강재 구매예산 낭비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1억 4,359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공사가 토목용보강재 계약체결시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지 않고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된 조달청 제3차 계약단가를 근거로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국가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감액 계약변경을 체결하여 1억 4,359만 원의 수입회복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38,719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11. 19.)

보상심의회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4억 4,414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요양병원에서 의사면허만 대여한 후 해당 의사가 병원에 상근하지 않는데도 상근하는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부당청구한 요양급여 4억 4,414만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68,180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구청 직원의 출장여비 부당 수령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11. 19.)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구청 직원의 출장여비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2억 6,497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월 15일 이상 상시적 출장이 있는 것으로 허위 출장부를 작성하여 부당하게 여비를 수령하고, 4시간 미만 출장에도 4시간 이상 출장으로 보고하여 여비를 부당 수령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와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부당 수령한 여비 2억 6,497만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44,095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민간위탁기관의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11. 19.)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민간위탁기관의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2억 9,798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공공기관 민간위탁운영업체 ○○지식재산센터 직원이 검직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인건비 전액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 받고 있으나, 검직을 하는 방법으로 관련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보조금 2억 9,798만 6,554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47,718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11. 19.)

보상심의회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2억 5,194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과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하여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허위 등록한 보육교사의 육아휴직급여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어린이집 보조금 등 2억 5,194여만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42,875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정부출연금 편취 등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11. 19.)

보상심의회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정부출연금 편취 등 의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4억 1,69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정부출연금이 지원되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장비 구입비 허위 청구, 연구원 허위 등록, 제3자에게 허위 용역 발주 등의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업체가 부정수급한 정부출연금 4억 1,690여만 원에 대한 환수 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다만, 신고자가 부패행위에 단순 가담한 부분에 대해 10% 감액함.



3. 결정결과

- 금 57,929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 **착안사항** :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감액사유 존재 여부 및 감액률

「장애인 표준사업장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11. 19.)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3억 7,500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제조업체가 다수의 거래처와 공모하여 보조금이 지원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련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금액 부풀리기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사업장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부정수급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3억 7,500만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76,500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허위 하도급에 의한 공사비 편취 등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12. 17.)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허위 하도급에 의한 공사비 편취 등 의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4억 552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비용절감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서에 명시된 공정을 미시공하거나, 산업안전 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4억 552여만 원의 공사비가 설계변경 감액되거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다만, 신고의 정확성 등을 고려하여 신고 이후 기성금 지급분은 30% 감액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 50만원을 공제함.



3. 결정결과

- 금 60,516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 **착안사항** : 감액사유 존재 여부 및 감액율,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 공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12. 17.)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편취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2억 8,957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업체 대표가 '일반 진공 열처리로'를 제작하여 설치하였음에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진공 이온질화 열처리로'를 제작하여 설치한 것처럼 대출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 저리로 대출받아 금리 차액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의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 금리를 적용한 이자 2억 8,957여만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67,914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지 여부, 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제2장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국립대 교수의 퇴임선물 명목 금품수수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3. 26.)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국립대 교수의 퇴임선물 명목 금품수수 의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15조 제5항 및 제7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퇴임 예정인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퇴임선물로 후배 교수 ○○○ 등 17명으로 부터 고가의 골프채 세트를 선물 받은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은 행위로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에 의하여 피신고자들 18명이 기소유예 또는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고,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및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큰 기여를 하여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탁금지법 제15조 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15,000천 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청탁금지법 제15조제5항 및 제7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인지 여부, 포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관급공사의 아스콘물량 허위과다 청구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5. 28.)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관급공사의 아스콘물량 허위과다 청구 의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신고와 수입회복간의 직접적 관련성이 없어 보상금 지급신청을 기각하고 포상금을 지급함.
- 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피신고자들이 공모하여 아스콘을 납품하면서 공사현장에서 납품 중량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중량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아스콘 납품대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보조금 3,378만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나, 신고자가 신고한 공사구간이 아닌 다른 공사구간의 환수결정이므로 신고와 수입회복간의 직접적 관련성이 없어 보상금 지급을 기각하고, 포상금을 지급함.



3. 결정결과

- 금 5,000천 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포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5. 28.)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의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함.
-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를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피신고자 등이 보조금을 받아 장애인 노유자 시설의 작업장을 신축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다만, 피신고자에 대한 신고유예처분이 위 신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검찰 고발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를 충족하지 못함.



3. 결정결과

- 포상금 기각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포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공공기관 재정 손실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10. 8.)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공공기관 재정손실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공단 한 담당자는 중복 수혜에 따른 보험급여를 환수하지 않았고, 다른 담당자는 중복 수혜에 따른 보험급여를 환수하면서 과다환수와 연체료 부과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에 의하여 ○○공단이 보험급여 환수로 재산상 이익을 가져왔고, 해당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점 등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2,500천 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포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하수관거 정비공사비 부당청구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5. 28.)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하수관거 정비공사비 부당청구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 없어 보상금 지급신청을 기각하고 포상금을 지급함.
- 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하수관거 정비를 임대형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기존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고 공사비를 부당 편취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 없었으나, 하수관거 부실시공 공정에 대하여 하자보수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포상금의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18,000천 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포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도청의 주방기자재 설치공사 입찰비리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10. 8.)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도청의 주방기자재 설치공사 입찰비리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도 소속 공무원이 △△재단의 공사입찰 발주과정에서 낙찰자 선정에 당초 입찰 제안서 평가자료에 명시되지 않았던 평가기준을 임의로 제시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에 의하여 피신고자에게 징계처분(불문경고)이 있었고, 해당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등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2,500천 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포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국군복지단 장병물품 납품비리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11. 19.)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국군복지단 장병물품 납품비리 의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국군복지단 마트운영 위탁물품 신규품목 선정에 참여하였던 (주)○○○ 등 65개 군납업체들이 허위 POS 영수증을 제출하여 국군복지단 납품업체로 선정되어 수백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 등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 및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 및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에 의하여 국군복지단 마트운영 위탁물품 선정 지침이 개정되고, 피신고자들을 포함한 사건 관련자 중 12명이 신분상 처분을 받음으로써, 해당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사례 방지하는데 큰 기여를 하여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22,000천 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포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고등학교 맞춤형 수업운영수당 편취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12. 17.)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고등학교 맞춤형 수업운영수당 편취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고등학교 교감과 교장이 인재 육성 지원사업으로 지원해 준 보조금에서 교사 멘토링 수업 운영계획에 따라 기초 영문법 수업한 것으로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고 청구하여 편취하고, △△교육청 담당자는 이를 묵인해준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에 의하여 피신고자들을 포함한 사건 관련자들이 업무상 배임, 업무상배임방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실이 있었고, 해당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사례 방지하는데 큰 기여를 하여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5,000천 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포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12. 17.)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보상금 지급신청은 기각하고 포상금을 지급함.
- 위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은 없으나 간호사 면허증을 위조한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요양병원에서 고의로 간호사 자격증을 위조한 A씨를 고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요양병원의 행정소송 승소로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은 없으나, 신고자의 신고에 의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예방 할 수 있었고, 간호사 면허증을 위조한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3,500천 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포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제3장

공익신고 사건

완강기 주변 물건 적치 의혹

2분과위원회(2018. 1. 22.)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완강기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여 완강기를 사용할 수 없게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이 소방시설인 완강기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완강기함을 비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청 조사결과, 피신고자들에게 각각 과태료 100만원 부과 및 완강기함 설치명령
 - ※ 통보일자 : 2019. 2. 11.
- 위원회 검토의견
 - ○○청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53조
- 착안사항 : 소방시설 주변 물건 적치 여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의혹

2분과위원회(2018. 3. 12.)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무자격자로 의심되는 종업원에게 명찰을 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CCTV 동영상, 신고자 등이 작성·제출한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피신고자가 무자격자인 종업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약사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광역시 ○구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광역시 ○구 조사결과, 업무정지 10일 행정처분 및 피신고자 수사기관 고발
 - ※ 통보일자 : 2018. 4. 17.
 - 경찰청 수사결과, 혐의 인정되어 피신고자 기소의견 검찰 송치
- **위원회 검토의견**
 - ○○광역시 ○구 조사결과와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약사법 제44조·제76조·제79조·제93조
- **착안사항** :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 여부 및 약사의 지시 여부

액화염소가스 충전 및 저장 위반 의혹

2분과위원회(2018. 3. 12.)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액화염소가스를 지하저장탱크에 저장한 후 지상에 있는 충전용기에 충전하여 판매하여 야 함에도 지하저장탱크 이송관 중간에 설치된 바이패스 관을 통해 충전용기에 직접 충전하고 있으며, 액화염소가스 저장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법으로 저장·보관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시에 소재한 액화염소가스 충전업체로 액화염소가스를 허가 받은 사항과 다르게 충전하고 용기에 저장하여 보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위반한 공익 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조사결과, 피신고자 고발 조치 및 행정지도
 - ※ 통보일자 : 2018. 5. 1.
 - 경찰청 수사결과, 혐의 인정되어 피신고자 기소의견 검찰 송치
 - ※ 통보일자 : 2018. 5. 28.
- **위원회 검토의견**
 - ○○시 조사결과와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9조·제13조·제38조·제39조
- **착안사항** : 액화염소가스 불법 저장·취급행위 여부

병원 내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행위 의혹

2분과위원회(2018. 3. 26.)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무자격자인 소속 직원에게 캐스트(석고붕대) 처치를 지시하여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CCTV 동영상, 피신고자 등이 작성·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피신고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의료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도 ○○군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군 조사결과, 업무정지 3개월에 걸음한 과징금 40,500,000원 부과, 피신고자의 자격정지 의뢰, 무면허 의료행위자(피신고자 소속 직원) 수사기관 고발 조치
※ 통보일자 : 2018. 4. 18.
 - 경찰청 수사결과, 혐의 인정되어 피신고자 기소의견 검찰 송치
- **위원회 검토의견**
 - ○○도 ○○군 조사결과와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의료법 제27조·제87조·제91조
- **착안사항** : 무면허자의 의료행위 및 의사의 지시 여부

도장 집진시설 비정상운영 의혹

2분과위원회(2018. 4. 9.)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도 ○○시 ○○구 소재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에서 도장공정(프라이머, 칼라, 크리어로 구성)상의 대기오염방지시설 내 필터를 규정과 다르게 접어서 사용하여 대기오염물질이 충분한 여과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배출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탄화수소(THC)의 배출허용농도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조사결과, 조업정지 10일, 개선명령
※ 통보일자 : 2019. 4. 16.
- 위원회 검토의견
 - ○○도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33조
- 착안사항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적정관리 여부

불법 폐기물 처리 의혹

2분과위원회(2018. 4. 9.)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회사는 ○○도 ○○군 소재 부지 내에 헨스를 설치하여 건축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을 적치 매립하여 공장용지 및 공단환경을 파괴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장 부지 내에서 피신고자들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건축폐기물 및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의혹이 있으므로, 이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도 ○○군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군 조사결과, 폐기물 조치명령, 기소의견 검찰 송치
 - ※ 통보일자 : 2018. 6. 29.
- **위원회 검토의견**
 - ○○도 ○○군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8조·제25조·제64조·제65조·제67조
- **착안사항** : 폐기물 불법 처리 여부

진료하지 않은 의사 명의의 처방전 발행 의혹

2분과위원회(2018. 4. 23.)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2는 환자 진료 후 피신고자1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1 및 병원 간호사 등이 작성·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피신고자2는 피신고자1 부재중 대리진료를 하던 의사로 피신고자1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의료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광역시 ○○구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광역시 ○○구 조사결과 피신고자 혐의점에 대하여 수사기관 고발
 - 경찰청 수사결과, 혐의 인정되어 피신고자 기소의견 검찰 송치
- **위원회 검토의견**
 - ○○광역시 ○○구 조사결과와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의료법 제17조·제89조
- **착안사항** : 대리진료 의사의 행정청 신고 여부 및 본인 명의 처방전 발행 여부

무자격자 눈썹문신 시술 의혹

2분과위원회(2018. 5. 28.)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1은 의사면허가 없음에도 2018. 2. 12. 피신고자2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불법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하였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2는 피신고자1로 하여금 의료행위인 눈썹문신 시술을 하게 하고, 피신고자1은 의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임에도 의료행위인 눈썹문신 시술을 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이는 「의료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의료법 제27조·제66조·제87조
- 착안사항 : 의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건축자재 성능인증서 부정발급 의혹

2분과위원회(2018. 9. 17.)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철근 이음용 건축자재를 제작하는 업체로, 조작된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부에서 공공기관 납품용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위원회에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한 결과, 피신고자가 조작된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크고, 동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신고자가 공공기관 납품용 성능인증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것이 되므로, 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조사 중
 - 경찰청 수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부 조사결과와 경찰청 수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7조·제35조
- 착안사항 : 건설자재 품질시험·검사 적정 여부 및 성능인증서 부정발급 여부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사용 의혹

2분과위원회(2018. 10. 8.)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1은 피신고자1이 제조한 허가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한의원을 운영하는 피신고자 2,3에게 납품하였고, 피신고자2,3은 신고제품을 환자의 치료에 사용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1은 허가 대상 의료기기인 신고제품을 허가 없이 제조하여 판매 혹은 수여 등의 형태로 피신고자2,3에게 공급하였고, 피신고자2,3은 신고제품을 환자의 치료에 사용한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이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〇〇〇〇처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〇〇〇〇처 조사결과, 피신고자1(의료기기 제조업자)에 대한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행위 적발로 행정처분 의뢰 및 고발 조치
 - ※ 통보일자 : 2018. 10. 19.
 - 〇〇〇〇처 조사결과,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사용한 피신고자2,3(의료기관)에 대하여 고발 조치
 - ※ 통보일자 : 2018. 10. 29.
- **위원회 검토의견**
 - 〇〇〇〇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교

- **적용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26조·제34조·제36조·제52조
- **착안사항** : 의료기기를 허가없이 제조·판매하였는지 여부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 의혹

2분과위원회(2018. 10. 8.)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제약회사)는 자사 의약품의 채택·처방 등 거래유지 목적으로 소속 영업사원들의 월별 매출액의 일부를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또는 법인카드로 지급하고 영업사원들은 각 거래처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현금과 물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임.



2. 의결이유

- 신고자는 피신고자 소속 영업사원이었던 사람으로 영업활동시 작성했던 리베이트 지급 대상, 규모, 지급한 자금의 출처 등이 기재된 영업장부 등을 제출하였고 확인한 결과 불법 리베이트 지급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이는 「약사법」 등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0000처, 00위원회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및 0000처 수사 중
 - 00위원회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0000처 수사결과와 00위원회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의료법 제23조의3·제88조, 약사법 제47조·제94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67조
- **착안사항** : 영업사원의 리베이트 자금 조성 경위·지급 규모·지급 기준, 의사·약사의 수수 여부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혹

2분과위원회(2018. 11. 5.)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본인 명의의 개설 병원 외 타인 명의의 병원을 개설하여 2개 이상의 병원을 운영하고, 환자의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면서 일반인을 참여시켜 수술 보조행위를 하게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였다는 것임.



2. 의결이유

- 신고자는 피신고자의 수술 행위시 참여했던 일반인의 수술 보조 장면 사진 등을 제출하였고, 피신고자가 2개 이상의 병원을 운영한다는 의혹 관련 병원내 자금 흐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확인한 결과 「의료법」 등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〇〇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 중
 - 〇〇시 조사결과, 피신고자에 대한 자격정지 및 영업정지 3개월 처분, 수사기관 고발
※ 통보일자 : 2019. 1. 30.
- **위원회 검토의견**
 - 〇〇시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경찰청 수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의료법 제27조·제33조·제87조·제88조·제91조
- **착안사항** : 2개 이상의 병원을 운영한다는 증거 확보 및 무면허자의 수술실 참여 여부

○○○ 제작업체들의 입찰담합 의혹

2분과위원회(2018. 11. 5.)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각각 낙찰 받을 물량을 미리 정한 후, 국내 기계업체들의 ○○○과 ○○○○ 구매입찰마다 메신저 등을 통하여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가격을 사전에 결정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 업체 직원들이 각각 얼마만큼의 ○○○과 ○○○○을 낙찰 받을지 협의하였고, 배정된 양(목표비율)을 고려하여 각각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으며, 구매입찰마다 메신저 등을 통하여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가격을 사전에 결정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위원회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위원회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위원회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1조·제22조·제66조
- 착안사항 : 입찰시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협의하였는지 여부

진료기록 허위 작성 및 부당청구 의혹

2분과위원회(2018. 11. 5.)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환자들에게 주사 처방만을 하였음에도 물리 치료까지 시행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다는 것임.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작성한 진료기록부를 보면 처방만 하고 물리치료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피신고자 소속 병원 직원들만 알아 볼 수 있도록 추가적인 표시를 해 놓았고, 신고자 역시 처방받지 않은 내역이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확인한 결과,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 중
 - ○○부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의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의료법 제22조·제8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착안사항 : 허위작성 된 진료기록부의 확보 및 신고자 진술 확보 여부

약사가 아닌 사람의 의약품 조제 의혹

2분과위원회(2018. 11. 19.)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약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만 조제 행위를 할 수 있는 약학대학교 실습생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을 맡겨 환자들을 상대로 조제행위를 하도록 시킨 후 피신고자는 커피숍 운영 등 다른 업무를 보았다는 것임.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장시간 약국을 비워두고 실습생들만 남아 환자들을 상대로 조제행위를 하고 있는 CCTV 동영상 확보 및 신고자가 작성한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확인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시, ○○○○공단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 중
 - ○○○시, ○○○○공단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시, ○○○○공단의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약사법 제23조·제93조
- 착안사항 : 약사 없이 운영되고 있는 약국 내부 동영상 등 증거자료 확보 여부

오수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의혹

2분과위원회(2018. 11. 19.)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사업장의 오수처리시설에서 농도가 높은 오수를 수시로 방류하여 심한 악취와 심각한 하천 오염을 초래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관리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방류수 중 부유물질 항목의 농도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도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시 조사결과, 개선명령 및 과태료 120만 원 부과
 - ※ 통보일자 : 2019. 1. 16.
- **위원회 검토의견**
 - ○○시 ○○구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하수도법 제7조·제40조·제80조
- **착안사항** : 오수처리시설 적정관리 여부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

2분과위원회(2018. 11. 19.)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도 ○○시 소재 일원에서 철거공사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을 하면서 매일 40~50대의 차량이 건물 인테리어 및 싱크대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폐타일, 나무, 고철 등 각종 사업장폐기물을 돈을 받고 철거해 오면, 재활용등이 가능한 나무, 고철 등은 선별하여 재활용업체에서 처리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타일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사업부지내 무단 매립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사업장폐기물 등을 반입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고철 및 폐목재 등을 선별하여 재활용업자 등에 반출하는 행위를 하면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폐기물처리 시설이 아닌 피신고자의 사업장내 부지에 매립한 의혹이 있으므로, 이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도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시 조사결과,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취소, 폐기물 제거조치명령, 고발
※ 통보일자 : 2018. 12. 27.
- **위원회 검토의견**
 - ○○도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5조·제63조·제64조
- **착안사항** : 폐기물 불법 매립 여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무단 운영 등 의혹

2분과위원회(2018. 11. 19.)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검사를 받지 않고 공장을 운영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검사를 받지 않고 취급시설을 사용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 장소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는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24조·제34조·제35조·제59조
- 착안사항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검사 여부

산업용 보일러 제조검사 미이행 등 의혹

2분과위원회(2018. 11. 19.)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목재펠릿 보일러 제조업자인 피신고자1은 보일러 제조검사(구조검사, 용접검사)를 받지 않고 보일러를 판매하였고, 보일러 설치자인 피신고자2는 보일러 설치검사를 받지 않고 보일러를 사용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1은 검사대상기기의 제조검사를 받지 않고 판매하였고, 피신고자2는 검사대상기기의 설치검사를 거치지 않고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부,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조사 중
 - 경찰청 수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부 조사결과와 경찰청 수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73조
- 착안사항 : 보일러의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 이행 여부

수입산 유채유의 원산지 허위 표시 의혹

2분과위원회(2018. 12. 3.)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수입(독일 또는 몽골) 유채씨를 이용 카놀라유를 제조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학교 급식용으로 유통시키고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운영하는 회사 내부에 보관중인 유채유에 기재된 원산지(한국)와 유채유의 원료 원산지(독일)가 다른 것을 확인하였고 현장 사진 등을 종합하여 확인한 결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0000관리원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 중
 - 0000관리원 수사 결과, 피신고자 기소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9. 3. 28.
- **위원회 검토의견**
 - 0000관리원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경찰청 수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4조, 학교급식법 제16조·제23조
- **착안사항** : 유채유 원료의 원산지 확인 및 완제품의 유통 여부

원산지 라벨 교체 의혹

2분과위원회(2018. 12. 3.)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베트남에서 수입한 운동복의 라벨을 국내산으로 갈아 유통시키고 있다는 것임.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베트남산 수입 운동복의 원산지 라벨을 국내산으로 교체하고 있는 행위를 확인하였고, 피신고자가 작성한 사실관계 확인서 등을 종합한 결과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청에서 수사한 결과, 피신고자 등 3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 ※ 통보일자 : 2019. 1. 14.
- **위원회 검토의견**
 - ○○청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대외무역법 제33조·제53조의2
- **착안사항**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는지 여부

나이트클럽의 고급 주류 가격 담합 의혹

2분과위원회(2018. 12. 17.)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의 유명 클럽 6개사는 고급 주류 4종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러한 내용의 가격인상 공지문을 공동으로 제작하여 영업담당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동 합의를 실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가격인상 공지문 하단에 피신고자 6개사의 상호가 나열된 점, 피신고자 임원이 동 가격인상 공지문을 소속 직원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배포한 점, 가격인상 공지문의 내용대로 실제 가격이 인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가격담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위원회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위원회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위원회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1조·제22조·제66조
- 착안사항 : 업체간 주류 판매가격 담합 여부

무등록 건설업 운영 의혹

2분과위원회(2018. 12. 17.)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무등록 업체에 건설공사를 위탁하고 해당 무등록 업체들은 위탁 받은 건설공사를 실제로 시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지방국토관리청의 행정처분 요청서, ○○구청의 행정처분서, 하도급계약서,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 조회 결과 등을 종합할 때, 「건설산업기본법」상 불법 재하도급, 무등록 건설업 운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5조·제95조의2·제96조
- 착안사항 : 불법 재하도급 및 무등록 건설업 여부

무신고 숙박업소 운영 의혹

2분과위원회(2018. 12. 17.)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해 단기 숙박 이용객을 모집하고 이들을 공동주택(아파트)에 숙박하게 함으로써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군과의 공동 현장조사 결과, 단기숙박 예약자 관리시스템 운영 사실, 카드단말기 보관 사실, 숙박료 입금내역 등이 확인되는데, 피신고자가 무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조사 및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군,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군 조사결과, 무등록 숙박업소 운영 혐의로 수사기관 고발
 - ※ 통보일자 : 2019. 3. 19.
 - 경찰청 수사결과, 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 검찰 송치
 - ※ 통보일자 : 2019. 3. 25
- **위원회 검토의견**
 - ○○군 조사결과와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1조·제11조의2·제20조
- **착안사항** : 무등록 숙박업소 여부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위반 의혹

2분과위원회(2018. 12. 17.)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석면건축물로 신고된 다중이용시설 건물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인으로 하여금 6개월에 한 번씩 손상성 및 비산성 상태를 확인하여 석면의 비산 방지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나, 손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상된 부위에 대하여 조치를 하지 않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인 피신고자1은 천장재 등 석면자재 손상에 대한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인 피신고자2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에 따라 건축물을 관리 하지 않은 의혹이 있으므로, 이는 「석면안전관리법」을 위반한 공익 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시 ○○구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구 조사결과,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 원 부과
 - ※ 통보일자 : 2018. 12. 26.
- **위원회 검토의견**
 - ○○시 ○○구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49조
- **착안사항** : 석면건축물 석면비산방지 여부

제4장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구조

1. 공익신고자 보호
2. 공익신고자 보상·포상·구조
3. 공익신고자 포상
4. 공익신고자 구조

제4장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구조

공익신고자 보호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 관련 책임감면 신청

전원위원회(2018. 1. 8.)

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행위를 경찰에 공익신고 하였으나, ○○부로부터 평가인증 취소를 받아 이러한 처분의 면제를 요구하며 책임감면을 신청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아동학대 신고는 공익신고등과의 관련성이 있고, 신청인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불리한 행정처분(평가인증 취소)을 받은 사실이 있음.
- 신청인이 소속 보육교사들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등 적극적인 방지 노력을 한 점과 아동학대 행위 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이 평가인증 제도의 신뢰를 저해하고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책임감면의 필요성이 상당함.



3. 결정결과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평가인증 취소처분의 면제를 요구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 **착안사항** :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책임감면의 필요성 여부

「폐기물관리법」 위반 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

전원위원회(2018. 5. 14.)

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청에 신고하였고,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이 소속된 파견업체에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하여 사실상 대기발령 상태에 있음.
- 이에 대해 신청인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하며, 피신청인의 '파견계약 해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의 불이익조치에 해당함.
- 신청인의 공익신고가 있는 후 2년 이내에 불이익조치를 받은 이상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호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됨.
- 조사기관의 현장조사 실시 직후 유급휴가를 실시하고, 피신청인이 파견업체에 휴가기간이 끝날 때까지 신청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유급휴가 마지막 날 계약해지를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익신고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의 불이익조치 추정 규정을 반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3. 결정결과

- 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함.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 **착안사항** : 공익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 여부

「노인학대」 신고 관련 책임감면 신청

전원위원회(2018. 5. 28.)

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의 노인학대 행위를 인지하고 노인전문보호 기관에 공익신고 하였으나, ○○구청으로부터 개선명령 사전통지를 받아 이러한 처분의 면제를 요구하며 책임감면을 신청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노인학대 신고는 공익신고등과의 관련성이 있고, 신청인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불리한 행정처분(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 신청인은 노인학대 행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시설 운영에 유·무형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져 신청인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책임감면의 필요성이 상당함.



3. 결정결과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면제를 요구하되,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 실시를 촉구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 **착안사항** :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책임감면의 필요성 여부

「노인학대」 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

전원위원회(2018. 7. 16.)

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사회복지재단에서 구청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센터장으로 근무 하던 중 센터 직원의 노인학대 사실을 확인하고, 구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함.
- 피신청기관은 해당 센터의 위수탁계약 만료를 사유로 신청인을 해임하였는데, 이에 대해 신청인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노인학대 신고는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공익신고에 해당하며, 피신청기관의 ‘해임 조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의 불이익조치에 해당함.
- 신청인의 공익신고가 있는 후 2년 이내에 불이익조치를 받은 이상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호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근태에 문제가 있었고, 종사자 사적 이용 문제가 있어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주의조치나 교육명령 등을 통해 시정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임에 이르게 한 이상 신청인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3. 결정결과

- 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계약해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함.
※ 피신청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위원회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행강제금 2천만 원을 부과함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제20조·제23조
- **착안사항** : 공익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 여부

허위·과장 광고 신고 관련 신분공개경위 확인 요구

전원위원회(2018. 10. 8.)

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요구인은 피신고자가 위조된 인증서를 제품판매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허위광고를 한 것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원회 담당자가 요구인의 여자친구이자 회사 대표의 이메일 주소를 피신고자에게 확인시켜 주어 요구인이 피신고자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이는 ○○위원회 담당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신분공개경위확인을 요구함.



2. 심의내용

- 요구인의 허위·과장 광고 신고는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공익신고에 해당함.
- 회사 직원의 이메일을 확인시켜 준 행위도 공익신고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 자의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해서는 아니되는 정보에 해당함.
- 국민신문고 관리자페이지에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라는 경고문이 있었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피신고자에게 요구인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시켜 주어 요구인이 피신고자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는 등 피해가 발생함.



3. 결정결과

- 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피요구인의 징계권자에게 피요구인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함.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 **착안사항**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였는지 여부

장애인 체벌 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

전원위원회(2018. 10. 22.)

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장애인 체벌 관련 장애인복지법 위반을 ○○부 등에 신고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시말서 작성 요구, 사직권고 등을 함.
- 이에 대해 신청인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피신청인 소속 장애인 체벌 관련 장애인복지법 위반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하며, 피신청인의 ‘시말서 작성 요구 및 사직권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의 불이익조치에 해당함.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만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여 인사조치의 형평에 맞지 않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인사와 징계에 관한 권한을 지닌 자로 피신청인의 이야기가 신분과 관련된 압박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으며, 사실상 사직을 권고하는 피신청인의 발언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익신고를 이유로 시말서 작성과 사직권고를 한 것으로 인정됨.



3. 결정결과

- 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말서 작성 요구와 사직권고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함



4. 비교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 **착안사항** : 공익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 여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신고 관련 신분공개경위 확인 요구

전원위원회(2018. 10. 22.)

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요구인은 피신고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였다는 내용과 건물 지붕이 불법 증축된 사실을 구청에 신고함.
- 요구인의 신고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려준 자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위반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함.



2. 심의내용

- 「건축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는 '국민의 안전'과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공익신고에 해당함.
- 건축허가과와 사회복지과의 담당 공무원들은 요구인의 공익신고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려준 사실이 없어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함.
- 피해대책위원장이 주민들 간의 단체 대화방에 요구인의 신고사실에 대한 비방 목적으로 이를 알린 것은 요구인이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3. 결정결과

- 위원회는 요구인이 이미 피해대책위원장을 고소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피해 대책위원장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의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기로 의결함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 **착안사항**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였는지 여부

「어린이집 부실 급·간식 및 아동학대」 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

전원위원회(2018. 12. 3.)

분과위원회(2018. 11. 18.)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어린이집의 부실급식과 아동학대 의혹에 대해 공익신고 하였고, 이후 어린이집은 「영유아 교육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처분, 아동학대 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2년의 처분을 받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어린이집 휴원 신청을 위해 모든 교사들에게 사직서를 받으면서 신청인에게는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것처럼 설명하여 사직서를 처리하였는데, 이는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라며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어린이집 부실 급·간식 및 아동학대 신고는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공익신고에 해당 하며, 신청인에게 사직의사가 없음에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피신청인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신청인을 해고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의 불 이익조치에 해당함.
- 최초 진술시 모든 교직원에게 사직 처리가 되어야 휴원이 가능한 것은 아님에도 이를 이유로 신청인 에게 사직서를 받았다고 한 점, 신청인이 사직서를 파기하여 사직서 제출 철회의 의사표시를 명 백히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기된 사직서를 복구하여 신청인을 사직 처 리한 것은 신청인의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해당된다고 보임.



3. 결정결과

- 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사직처리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함.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제20조·제23조
- **착안사항** : 공익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 여부

제4장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구조

공익신고자 보상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1. 8.)

보상심의회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에서 돼지고기 및 소고기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였다고 ○○원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에 6,700만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벌금 총 6,700만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나, 신청인이 이 건 공익신고를 이유로 ○○원으로부터 포상금 총 175만 원을 수령하여 해당 금액을 공제함.



3. 결정결과

- 금 11,65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 감면 모의」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2. 26.)

보상심의회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에서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에 48억 9,600만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한 경쟁을 침해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징금 총 48억 9,600만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공제 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공익침해행위 가담에 따른 감액 30% 사유 존재



3. 결정결과

- 금 267,288천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2. 26.)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사업 입찰에서 입찰담합행위를 하였다고 ○○공단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에 5억 4,100만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한 경쟁을 침해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징금 총 5억 4,100만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3. 결정결과

- 금 80,100천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2. 26.)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 후 무기성오니(진흙케익과 슬러지)와 폐석재 및 일반토사를 「폐기물관리법」상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매립하고 있다고 관할 환경청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 400만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환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태료 총 400만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3. 결정결과

- 금 800천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예금 등의 설명 확인의무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2. 26.)

보상심의회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에서 예금 등 계약 체결 시 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에 3,000만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태료 총 3,000만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3. 결정결과

- 금 6,000천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방해」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2. 26.)

보상심의회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들은 10개의 피신고업체들이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입찰담합을 하였고, 직접 생산한 제품이 아니라 중국에서 수입한 전선을 납품하였다고 관할 지방경찰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담합행위에 따른 과징금은 피신고업체들 중 자진신고에 따른 것이므로 신고와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고, 입찰방해는 담합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 입찰의 공정이 해하여지는 것이고 처벌도 「형법」에 따른 것이므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들이 담합행위를 관할 지방경찰청 등에 최초 신고한 시점은 2013. 11. 15.인데 반해, 피 신고업체들 중 자진신고한 피신고업체가 최초 신고한 시점은 이 보다 빠른 2013. 10. 14.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자진신고에 따라 조사 후 과징금 86억 4,700만을 부과하였으므로, 해당 과징금은 신청인들의 신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또한, ‘입찰방해’는 담합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 입찰의 공정이 해하여지는 것이고, 이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형법」 제315조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는 것인바, 「형법」은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익신고로 볼 수 없음.



3. 결정결과

- 신청인의 보상금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1)

전원위원회(2018. 3. 26.)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입찰참여업체들과 담합을 통해 공사 수주 및 담합 대가로 수백억원 상당의 공사 지분과 공사 구간의 수백억 원 상당의 하도급을 주기로 하였다고 위원회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과징금 33억 4,900만 원과 벌금 1억 4,000만 원 징수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한 경쟁과 안전 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징금 33억 4,900만 원 및 벌금 총 1억 4,000만 원이 부과·징수된 것으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3. 결정결과

- 금 315,34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미가동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미가동 등 위반행위에 대해 관할유역환경청과 위원회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총 2,000만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환경과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벌금 총 2,000만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3. 결정결과

- 금 4,0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2)

전원위원회(2018. 3. 26.)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들이 ○○ 입찰에서 응찰 가격을 사전에 협의하는 등 입찰담합 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과징금 7억 5,200만 원과 벌금 2억 원 징수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한 경쟁과 안전 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징금 7억 5,200만 원 및 벌금 2억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나, 공익신고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포상금 1,878만 원은 산정 보상금에서 제외



3. 결정결과

- 금 84,42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6. 11.)

보상심의회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에서 선·후 지원금, 랜딩비(어떤 일을 착수할 때 먼저 주는 돈) 등의 명목으로 전국 병·의원을 상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에 7,410만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의료법」 위반으로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자들에게 벌금 및 추징금 총 7,410만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공제 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익침해행위 가담에 따른 감액 10% 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13,338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폐기물관리법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6 1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준수사항 위반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다고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3,290만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환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태료 및 과징금, 벌금 총 3,290만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3. 결정결과

- 금 6,58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7. 16.)

보상심의회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위원회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5,200만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환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태료 5,200만 원이 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3. 결정결과

- 금 10,4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기관석면조사 미 실시」 건 관련 보상금 기각

전원위원회(2018. 7. 16.)

보상심의회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각 시군구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취득한 자료를 첨부하여 과태료 부과내역 중 건축물 철거·멸실 연면적 200㎡이상인 자(성명불상)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기관석면조사 미 실시)으로 의심되니 관할 노동청에 의법처리 요청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관할 노동청에 수납 결과를 정보공개요청한 후 수령한 수납 내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공익신고는 ①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과 ②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③공익침해행위 내용, ④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와 함께 ⑤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경우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와 구체적인 공익침해행위를 특정하지 않았으며,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공익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보상금 지급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성명불상의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미이행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의심에 대해 조사 및 처리를 요청하여 공익침해를 하는 자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는 정보를 공개한 구청에서 확인하라고 하며 별도의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공익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 없는 점, 별도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공익침해행위 제거에 이바지한 바가 없는 점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 의거하여 보상금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함.



3. 결정결과

- 신청인의 보상금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8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건축물 가구수 무단증가」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7. 16.)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자가 다세대주택을 불법으로 수선하여 가구수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관할 지방검찰청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건축물 가구수 무단증가’는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가 맞지만, 신청인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7호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금 지급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이 신고한 ‘건축물 가구수 무단증가’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함.
- 다만,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7호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른 내부공익신고자에 해당하여야 함.
- 그런데, 신청인은 피신고자의 다세대주택에 거주할 목적으로 건축물 소유자인 피신고자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였을 뿐 이 계약에 따라 신청인이 수행해야 할 업무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신청인을 피신고자의 지도 또는 관리·감독을 받는 자로서 공익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로부터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내부 공익신고자로 볼 수 없음.



3. 결정결과

- 신청인의 보상금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내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식품회사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10. 8.)

보상심의회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식품회사가 대리점 점주들에게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였다고 위원회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과징금 7억 6,200만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징금 7억 6,200만 원이 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3. 결정결과

- 금 102,2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주유소 정량미달 유류 판매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10. 8.)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 주유소가 정량미달 유류 판매 등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관할지방검찰청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벌금 3,000만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계량에 관한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벌금 3,000만 원이 부과되어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나, 부과된 벌금 전액이 미납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2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의 50% 지급



3. 결정결과

- 금 3,0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의료기관의 불법 광고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11. 19.)

보상심의회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의 불법 광고행위를 관할 검찰청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806여만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의료법」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징금 806여만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3. 결정결과

- 금 1,612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요양병원 환자 폭행」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11. 19.)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요양병원의 환자 폭행 행위를 관할 경찰청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200만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벌금 200만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3. 결정결과

- 금 4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시외버스 운행노선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11. 19.)

보상심의회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운행노선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과징금 360만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징금 360만 원이 부과되어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3. 결정결과

- 금 72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11. 19.)

보상심의회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제약회사가 의학전문지 발간업체 등을 통해 책자 발행(원고료)등의 명목으로 제약사 거래처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였다고 관할 지방검찰청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7억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약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국민의 건강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징금 7억 원이 부과되어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3. 결정결과

- 금 96,0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12. 27.)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제품에 대한 공장도 가격을 인상하고 판매량에 대한 시장점유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있으며, 제3의 업체에 대한 시장진입을 방해하며 종국에는 합병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에 644여억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한 경쟁을 침해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징금 총 644여억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나, 신청인이 이 건 공익신고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포상금 총 3억 776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산정보상금에서 이를 공제함.



3. 결정결과

- 금 692,240천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12. 17.)

보상심의회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에서 아파트 재건축공사의 창호, 금속, 유리공사 등 7건을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게 함으로써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을 위반하였다고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에 7억 9,897여만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자들에게 벌금 및 과징금 총 7억 9,897여만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3. 결정결과

- 금 106,397천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4장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구조

공익신고자 포상



「의료법 위반 신고」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5. 28.)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가 의료행위(주사행위)를 하고 MRI 뇌혈관 조영 검사 시 식염수가 아닌 증류수를 사용하였다고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위원회는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직권 선정함.
- 위 신고로 인하여 ○○병원에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 사전통지가 있었고, 특별감사 결과 증류수 오용 및 사건 은폐사실이 확인되는 등 공익증진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의 신고내용은 「의료법」 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신고자는 ○○병원의 증류수 오용 문제를 신고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를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적발하는 데 기여한 것이므로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됨.
- 포상금 지급기준 중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중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침해를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익침해행위가 밝혀져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 해당함.



3. 결정결과

- 금 5,000천 원 포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5조의3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포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가상통화 판매」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6. 1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피신고업체를 설립·운영하면서 가상화폐(가상통화)를 발행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다수의 투자자를 끌어들이 불법 자금을 모집하는 등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였고, 위원회는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직권 선정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업체 관련자들에게 징역 1년6월 ~ 징역 6년, 벌금 2,000만 원이 부과되는 등 공익증진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가상화폐를 판매하여 1,781여 만 원을 편취한 피신고자들을 적발하는 데 기여한 것이므로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됨.
- 포상금 지급기준 중 '신분상 사법 처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3. 결정결과

- 금 29,200천 원 포상금 지급 결정



4. 비교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5조의3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포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아동 학대행위」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6. 1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아동복지시설인 ○○보육원에서 종사자들인 사무국장 및 보육교사들이 보육아동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있다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위원회는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직권 선정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에게 징역 6월 ~ 징역 2년, 벌금 600만 원이 부과되는 등 공익증진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하여 10여년에 걸쳐 계속된 장기간의 아동학대 행위가 적발되어 피신고자들이 처벌을 받는 등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됨.
- 포상금 지급기준 중 '신분상 사법 처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3. 결정결과

- 금 10,000천 원 포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5조의3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포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6. 1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병원이 한의사 명의로 개설되었으나 의료인이 아닌 피신고자가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이라고 ○○시 ○○구에 신고하였고, 위원회는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직권 선정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에게 징역 10월 ~ 징역 3년이 부과되는 등 공익증진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증진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의료법」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하여 건전한 의료 질서를 저해하고 국민 건강상의 위해를 가져온 피신고자들이 처벌을 받는 등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됨.
- 포상금 지급기준 중 '신분상 사법 처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3. 결정결과

- 금 10,000천 원 포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5조의3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포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상호저축은행 금지 행위 위반」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7. 16.)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피신고자가 예치한 정기예금을 중도에 해지하면서 이자를 과다 지급하는 등 대주주 등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위원회는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직권 선정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관할 법원은 벌금 총 2,500만 원의 선고유예판결을 하여 대주주 등이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을 적발하여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등 서민금융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였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내지 제25조의3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하여 관할 법원이 피신고업체 및 대표자 등에게 벌금 총 2,5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등 서민금융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됨.
- 포상금 지급기준 중 '신분상 사법 처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3. 결정결과

- 금 1,250천 원 포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의2·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내지 제25조의3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포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무면허 의료행위」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12. 1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무자격자 4명을 고용하여 ‘우드테라피’ 시술과 의료용 진동기를 사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시 ○○구에 신고하였고, ○○시 ○○구에서는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업체에 과징금 2,025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의료법」 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징금 2,025만 원 부과 처분되어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에 기여하는 등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됨.
- 포상금 지급기준 중 ‘과태료·과징금의 부과 처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3. 결정결과

- 금 1,012천 원 포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5조의3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포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폐수 무단 방류」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12. 17.)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피신고업체가 폐수로 추정되는 물을 흘려보내면서 인근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시 ○○구에 신고하였고, ○○시 ○○구는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업체에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환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조업정지 3개월이 처분된 것이므로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됨.
- 포상금 지급기준 중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3. 결정결과

- 금 3,700천 원 포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5조의3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포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4장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구조

공익신고자 구조



「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신고」건 관련 구조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5. 28.)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소맥전분을 제조하는 피신고업체가 곰팡이가 생기거나 부패한 재료를 사용하는 등 「식품 위생법」을 위반하였다고 위원회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함.
- 신청인이 공익신고후 신분이 노출되어 권유에 의해 퇴사하였고, 정신적 트라우마와 불안 및 동종업계의 소문으로 재취업에 실패하는 등 경제적 손해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27조의2에 따라 퇴사한 후 재취업하기까지 기간의 임금상당액의 손해에 해당하는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권유에 의한 사직서 제출과 실직상태부터 재취업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임금상당액 손해는,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피신고업체가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여 발생한 중대한 경제적 손해이므로 공익신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됨
- 신청인이 권유에 의한 사직 권유가 강제성은 없을지라도 신청인이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부득이 퇴사하였고, 퇴사후 재취업까지 일용근로 외에 정규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이 인정됨.
- 신청인이 공익신고로 퇴사한 후 재취업하기까지 기간에 대하여 해당기간 동안의 일용근로소득 금액과 이미 지급받은 포상금액을 제외한 후 구조금 지급기준에 따라 구조금을 산정함.



3. 결정결과

- 금 13,933,720원 구조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내지 27조의 2
- **착안사항** : 구조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아동 학대행위 등 위반 의혹」 신고 관련 구조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7. 16.)

보상심의회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아동복지시설의 직원 채용 비리, 보조금 부정수급 등 운영비리, 아동학대(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은폐 등을 위원회, ○○도, 감사원, ○○시 등에 각각 신고한 후, 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함.
- 피신고시설에서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신청인을 해고하였으며, 법원판결로 복직된 이후에는 징계처분을 하는 등 보복조치를 계속하여 이에 대응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27조의2에 따라 병원비를 구조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 위반으로 벌금 부과, 시설폐쇄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비 영수증 등과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병원비의 경우 공익신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됨.
- 신청인은 입사이후 피신고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비리 등을 지속적으로 신고하였고, 현재도 후원금 계좌 불법 관리, 시설인가 공무원 직권남용(또는 직무유기) 의혹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신고하였으며, 공익 신고 이후 명예훼손 소송 및 해고 무효 소송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응급 치료를 받는 등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됨.



3. 결정결과

- 금 500,000원 구조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7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27조의2
- **착안사항** : 구조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 신고 관련 구조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10. 8.)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수산이 식품안전인증관리기준(HACCP)을 위반하고 및 부정·불량 식품을 제조한 의혹이 있다고 ○○지방식약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함.
- 공익신고 이후 피신고 업체에서 신청인에 대하여 자택 대기발령 통지 이후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피신청인과 화해하였으나, 피신고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신청인 가족에 대한 위협이 계속 되어 이사를 하였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27조의2에 따라 이사비용을 구조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취소,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신청인이 제출한 영수증과 신변보호조치 연장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이사 비용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에서 '전직·파견근무·신변보호 등으로 소요된 이사 비용'에 해당함.
- 부동산 중계수수료도 이사에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사비용에 포함됨.



3. 결정결과

- 금 1,860,000원 구조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7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27조의2
- **착안사항** : 구조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무면허 의료행위 의혹」 신고 관련 구조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11. 19.)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뇌혈류초음파 검사를 하며 응급구조사가 주사행위를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관할보건소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함.
- 공익신고 이후 무자격자 의료행위에 가담한 사실로 고발되었으며, 신청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소요된 변호사 비용은 공익신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27조의2에 따라 변호사 비용 및 병원비를 구조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은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형 및 벌금 부과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신청인이 공익신고로 인하여 본인도 함께 적발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점, 신청인의 신고가 없었다면 해당 공익침해행위가 적발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신고와 병원비 및 변호사 비용 지출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3. 결정결과

- 금 3,015,900원 구조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7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27조의2
- **착안사항** : 구조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작업장 안전조치 소홀 의혹」건 관련 구조금 지급

전원위원회(2018. 12. 17.)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블럭을 제작하는 피신고업체가 근로자의 작업시 추락방지 등을 위한 안전간판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부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함.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로부터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을 이유로 '부당해고'라는 불이익 조치를 받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무사를 선임했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27조의2에 따라 노무사 선임비용을 구조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은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벌금 부과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신청인은 이 신고 후 피신고업체로부터 해고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무사를 선임한 것이므로 신청인이 노무사 선임에 지출한 비용은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용된 비용에 해당함.



3. 결정결과

- 금 880,000원 구조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내지 27조의 2
- **착안사항** : 구조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5장

참고자료

1. 부패행위신고 및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의 이해
2.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의 이해

1. 부패행위신고 및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이해

1. 부패행위 신고제도

① 부패행위 신고제도의 의의

- 부패행위 신고는 조직의 구조적이고 은밀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하여 행하는 용기이며, 투명한 사회 건설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임
- 부패신고 제도의 법적 근거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 제2조, 제29조, 제55조~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64조임

② 부패신고 주체 및 방법

- (주체)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음
- 특히 공직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방법) 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②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③ 부패신고 대상 : 부패행위

- 권익위법 제2조 제4호에서 말하는 부패행위는 다음과 같음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④ 부패신고 처리절차



| 조사결과 미흡 시 재조사 요구(권익위→조사기관)
| 공직자 부패사건에 대한 재정신청(권익위→고등법원)

2.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①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분보장

- 신고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 공직자인 신고자는 위원회에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②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변보호

- 신고로 인해 신고자·친족·동거인 및 협조자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음.
- 보호조치의 요구는 신고자와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요구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함.
 - ※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③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됨.
-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형사절차에서 「특정 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여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증인 심문 시 영상물 촬영으로 대체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신고자가 위원회의 처리 및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함.

④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기타 보호제도

- (책임의 감면)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 또는 징계의 감면

- (직무상 비밀의무 준수 배제) 신고한 경우 다른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불이익 추정) 신고한 뒤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추정
 - ※ 불이익 추정 관련 규정은 신고자의 경우에만 적용됨

3.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제도

1] 신고 보상금 제도의 의의

-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손해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신고 활성화와 부패예방 및 척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권익위법 제68조제2항~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83조를 법적 근거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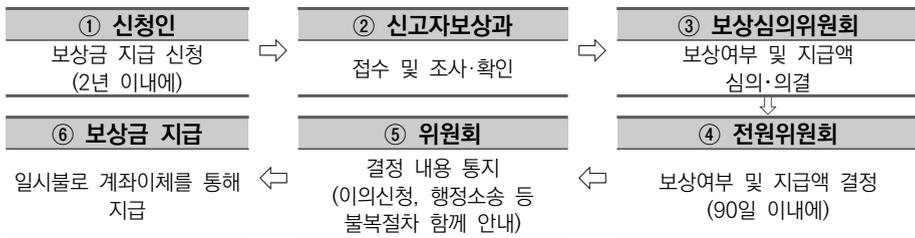
2] 보상금 지급 요건

- 보상금의 지급은 ① 권익위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②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③ 그에 관한 법률 관계가 확정된 때 가능함
- 이때,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비용절감 등이 부패행위 신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증대, 비용절감’의 종류 (시행령 제72조)

- ▶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 ▶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 ▶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은 제외

3] 보상금 지급 절차



4 보상금 지급 기준 및 감액 사유 등

보상대상가액	지급 기준	비 고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 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 1천만 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 2천만 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 8천만 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최대한도 30억

감액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행위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부패신고의 정확성 정도 ▶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 신고자가 부패사건 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
지급 제한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공제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포상금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금(이하 “보상금 등”)을 받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미 받은 보상금 등의 액수가 수령할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많으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② 이미 받은 보상금 등의 액수가 수령할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으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받은 보상금 등의 액수를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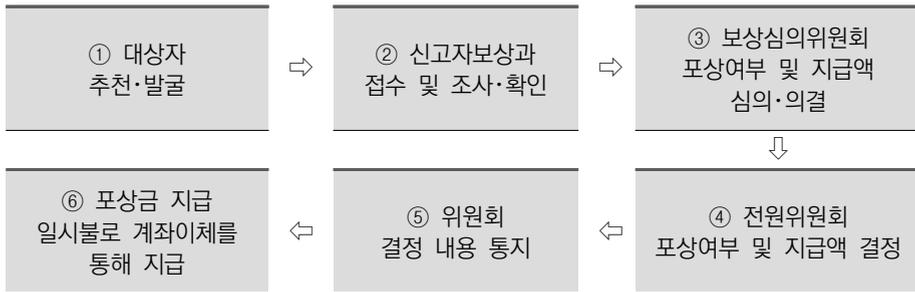
※ **보상대상가액** :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 회복·증대 또는 비용절감 금액, 또는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4.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제도

① 포상금 제도의 의의

- 보상금의 경우 신고로 인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에 직접적으로 기여해야만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로 인한 공익 증진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받지 못하는 불합리 개선
- 권익위법 제68조 제1항, 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를 법적근거로 함

② 포상금 지급 절차



③ 포상금 지급 요건 및 기준

❖ 지급요건	❖ 지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익위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 또는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억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 금품 등 자진 신고의 경우, 5억원의 범위 내에서 신고 금액의 30% 지급 ▪ 감액, 지급 제한 등은 보상금 지급 규정 준용

〈참고〉 포상금 지급 사유

- ▶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유예, 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 ▶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 ▶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 ▶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의 이해

1. 공익침해행위 신고제도

① 신고 주체 및 방법

- (주체)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 신고를 할 수 있음
 - ※ 반드시 근로자나 업체관계자 등 내부 신고자로 한정하지 않음
- (방법)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공익신고기관에 기명의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공익신고기관

-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사용자
- ◆ 소관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관련 공공기관
- ◆ 국회의원
- ◆ 국민권익위원회

② 신고 대상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과 관련하여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284개 적용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 <별첨> 공익신고 대상법률
- ①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②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음

③ 공익침해행위 신고 및 접수·처리 절차

- (조사기관의 처리) 공익신고를 이첩 받은 조사수사기관은 조사수사 종료 후 10일 이내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보
- (대표자 등의 처리) 공익신고를 받은 대표자들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공익 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협조 요청
 - ※ 대표자들은 공익신고자가 요구하거나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신고자가 동의한 경우 조사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중 하나에 신고사항 송부

- (국회의원, 공공기관 등의 처리) 공익신고를 받은 국회의원과 공공단체는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중 하나에 송부

4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 (개요)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자의 이름이 아닌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근거 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18.10.18. 시행)을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법 제8조의2) 신설
-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공익신고자를 대리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고, 증거자료 제출이나 조사·수사 과정에서의 의견진술 등도 대리하게 됨
- (제출 서류) 대리신고를 하려는 변호사는 변호사의 이름으로 작성한 신고서, 증거자료와 함께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증 사본 등) 및 위임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봉인하여 보관하고,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 불가

2.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1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

- (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도 할 수 없음
 -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불이익 조치의 종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보호조치 결정)**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위원회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그 밖에 불이익 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 ※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천만 원 이하, 매년 2회, 2년의 범위 내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 **(특별보호조치 결정)**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라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공익신고자로 보호

②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변보호

- 공익 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서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③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 **(비밀보장 의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보도하지 않도록 의무화
 -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신고내용 비공개 의무)**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의무화
 -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④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기타 보호제도

- **(형의 감경·면제)**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면제 가능
- **(징계·불리한 행정처분 감면)**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을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징계권자·행정처분권자에게 감면 요구
-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 배제)**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 단체협약, 고용계약, 공급계약 등에 규정된 공익신고의 금지·제한규정은 무효
- **(손해배상 청구 금지)** 피신고자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배상 청구 금지

3. 공익신고자 보상·포상·구조 제도

① 보상금 지급

- (신청요건)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하여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보상금 신청 가능

❖ 보상금 신청요건이 되는 수입 회복·증대 사유

- ◆ 벌칙·통고 처분, 몰수·추징금 부과
- ◆ 과태료·이행강제금, 과징금(인·허가 취소·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포함) 부과
- ◆ 국세·지방세 부과, 부담금·가산금 부과,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 (지급금액) 행정처분액의 4%~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저 20만원 초과액 ~최고 30억원

② 포상금 지급

- (지급요건) 국가·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 방지, 제도개선에 기여하는 등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위원회의 재량으로 내·외부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

❖ 포상금 지급 사유

- ◆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형의 선고,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 ◆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 외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과태료·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 ◆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 (지급금액) 최대 2억원 범위 내에서 보상심의회에서 결정

③ 구조금 지급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

❖ 피해·비용 지출 사유

- ◆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전직·파견 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 비용
- ◆ 원상회복 관련 쟁송 절차에 소요된 비용,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 국가는 구조금의 범위에서 그 피해·비용지출의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건강〉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2	가축전염병예방법(농림축산식품부)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4	건강검진기본법(보건복지부)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
6	검역법(보건복지부)
7	공중위생관리법(보건복지부)
8	국민건강보험법(보건복지부)
9	국민건강증진법(보건복지부)
10	국민영향관리법(보건복지부)
11	노인복지법(보건복지부)
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보건복지부)
13	농수산물품질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14	농약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1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
16	먹는물관리법(환경부)
17	모자보건법(보건복지부)
18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무부)
19	비료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20	사료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2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22	소금산업 진흥법(해양수산부)
2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해양수산부)
24	식물방역법(농림축산식품부)
25	식물신품종 보호법(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26	식품산업진흥법(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27	식품안전기본법(식품의약품안전처)
28	식품위생법(식품의약품안전처)
29	약사법(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30	양곡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3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식품의약품안전처)
32	위생사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3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3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35	의료기기법(식품의약품안전처)
3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37	의료법(보건복지부)
38	인삼산업법(농림축산식품부)
39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4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산림청)
4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4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43	정신보건법(보건복지부)
44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45	종자산업법(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46	지역관리법(보건복지부)
47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48	청소년보호법(여성가족부)
49	축산물위생관리법(식품의약품안전처)
5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라지원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5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경찰청)
52	학교급식법(교육부)
53	학교보건법(교육부)
54	혈액관리법(보건복지부)
55	화장품법(식품의약품안전처)
5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보건복지부)
<안 전>	
1	개항질서법(해양수산부)
2	건설기계관리법(국토교통부)
3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4	건설산업기본법(국토교통부)
5	건축법(국토교통부)
6	건축사법(국토교통부)
7	경비업법(경찰청)
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9	공연법(문화체육관광부)
10	광산보안법(산업통상자원부)
1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12	교통안전법(국토교통부)
1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국토교통부)
14	궤도운송법(국토교통부)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15	금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국민안전처)
16	낙시관리 및 육성법(해양수산부)
17	농어촌도로 정비법(행정자치부)
18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19	농업기계화 촉진법(농림축산식품부)
2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국민안전처)
2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22	도로교통법(경찰청)
23	도로법(국토교통부)
24	도선법(해양수산부)
25	도시가스사업법(산업통상자원부)
2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27	도시철도법(국토교통부)
28	동물보호법(농림축산식품부)
29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미래창조과학부)
30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경찰청)
31	사회복지사업법(보건복지부)
32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3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원자력안전위원회)
34	석면안전관리법(환경부)
35	선박안전법(해양수산부)
36	소방시설공사사업법(국민안전처)
37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국민안전처)
38	송유관 안전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39	수난구호법(국민안전처)
40	수상레저안전법(국민안전처)
4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국민안전처)
4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43	아동복지법(보건복지부)
4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산업통상자원부)
4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국민안전처)
46	어선법(해양수산부)
4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산업통상자원부)
4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미래창조과학부)
4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안전위원회)
50	원자력안전법(원자력안전위원회)
51	위험물안전관리법(국민안전처)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52	유선 및 도선사업법(국민안전처)
53	자동차관리법(국토교통부)
54	자연재해대책법(국민안전처)
5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국민안전처)
56	재해구호법(국민안전처)
57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국민안전처)
58	전기공사사업법(산업통상자원부)
59	전기사업법(산업통상자원부)
60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61	전력기술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62	정보통신공사사업법(미래창조과학부)
63	제품안전기본법(산업통상자원부)
64	주택법(국토교통부)
65	지진재해대책법(국민안전처)
66	집단에너지사업법(산업통상자원부)
67	철도안전법(국토교통부)
68	청소년활동진흥법(여성가족부)
6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70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국민안전처)
7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경찰청)
7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7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교육부)
74	항공법(국토교통부)
75	항공보안법(국토교통부)
76	항로표지법(해양수산부)
77	항만법(해양수산부)
78	해사안전법(해양수산부)
79	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환 경>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환경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환경부)
3	골재채취법(국토교통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환경부)
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환경부)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9	내수면어업법(해양수산부)
10	농지법(농림축산식품부)
1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환경부)
12	대기환경보전법(환경부)
13	독도 등 도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환경부)
14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15	문화재보호법(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1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환경부)
17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18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산림청, 환경부)
19	사방사업법(산림청)
2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산림청)
21	산림보호법(산림청)
2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청)
23	산지관리법(산림청)
2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환경부)
2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산림청)
26	소하천정비법(국민안전처)
27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환경부)
28	수도법(환경부)
29	수산업법(해양수산부)
30	수산자원관리법(해양수산부)
3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환경부)
32	습지보전법(환경부, 해양수산부)
33	악취방지법(환경부)
3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환경부)
35	어장관리법(해양수산부)
36	어촌·어항법(해양수산부)
3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환경부)
38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별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39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행정자치부)
40	인공조명에 관한 빛공해방지법(환경부)
41	자연공원법(환경부)
42	자연환경보전법(환경부)
4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환경부)
4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환경부)
45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환경부)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4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47	지하수법(국토교통부)
48	초지법(농림축산식품부)
49	토양환경보전법(환경부)
50	폐기물관리법(환경부)
51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환경부)
52	하수도법(환경부)
53	하천법(국토교통부)
5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환경부)
5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5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57	해양환경관리법(해양수산부)
58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부)
59	환경보건법(환경부)
60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환경부)
61	환경영향평가법(환경부)
〈소비자 이익〉	
1	개인정보보호법(행정자치부)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5	계량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6	고령친화산업진흥법(보건복지부)
7	고용보험법(고용노동부)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9	공인중개사법(국토교통부)
10	관광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11	국가기술자격법(고용노동부)
12	근로복지기본법(고용노동부)
13	금융지주회사법(금융위원회)
14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15	대부업의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16	대외무역법(산업통상자원부)
17	말산업 육성법(농림축산식품부)
1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문화체육관광부)
1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
20	물류정책기본법(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2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22	보험업법(금융위원회)
23	복권 및 복권기금법(기획재정부)
2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2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보건복지부)
2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2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28	산업디자인진흥법(산업통상자원부)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노동부)
30	산업표준화법(산업통상자원부)
31	상표법(특허청)
32	상호저축은행법(금융위원회)
33	새마을금고법(행정자치부)
3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산업통상자원부)
35	소비자기본법(공정거래위원회)
36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산업통상자원부)
3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3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39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여성가족부)
40	아이돌봄 지원법(여성가족부)
4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국토교통부)
42	여신전문금융업법(금융위원회)
43	영유아보육법(보건복지부)
4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45	외국환거래법(기획재정부)
46	외식산업 진흥법(농림축산식품부)
47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48	유아교육법(교육부)
49	은행법(금융위원회)
5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51	임대주택법(국토교통부)
52	입양특례법(보건복지부)
53	자격기본법(교육부, 고용노동부)
5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55	장애인복지법(보건복지부)
56	전기통신사업법(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5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5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59	정보통신기반 보호법(미래창조과학부)
6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6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62	직업안정법(고용노동부)
63	철도사업법(국토교통부)
64	축산법(농림축산식품부)
6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6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67	항만운송사업법(해양수산부)
68	해운법(해양수산부)
6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국토교통부)
〈공정한 경쟁〉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2	경륜·경정법(문화체육관광부)
3	국민체육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4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법무부)
5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특허청)
1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청)
1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보건복지부)
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15	한국마사회법(농림축산식품부)
〈이에 준하는 공익〉	
1	방위사업법(국방부)
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국방부)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중소벤처기업부)
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이용 안내

❖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이용하시고,
신고 전에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우 편 | (0374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팩 스 | 044) 200-7972

인 터 넷 | 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신문고 1398.acrc.go.kr

방 문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전 화 상 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국민권익위원회

2018년도 부패·공익침해 신고 사례집(제17집)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발행일 2019년 7월
인쇄처 사회복지법인 해든디자인플러스
Tel. 02) 868-6854

본 부패·공익침해 신고 사례집의 내용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
☎ 044)200-7696 Fax:044)200-7943